

박사학위논문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송 재 원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용식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or Changes

2018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송 재 원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용식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or Changes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송 재 원

송재원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한성대학교 대학원

경 영 학 과

회계학전공

송 재 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상장회사의 연도별 자료 4,580개를 표본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반기검토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피감사 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감사 기간에 일어났다. 감사 기간보다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반기검토 기간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감사보수를 상호 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에서 감사보수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는 상대적으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감사 기간에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감사인 교체 현상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된 경영자 교체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분·반기검토 기간까지 모든 기간에서 경영자 교체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경영자는 협조적인 감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을 통해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전체표본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 각각 중간값과 '0'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로 구분한 4개의 집단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감사 기간에서 비정상감사보수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재량 발생액보다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재량 발생액이 낮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더라도 감사투입시간이 재량 발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경우 감사인 교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감독당국의 감사인 교체와 관련한 제도개선(案)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등록 기본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 감사인등록), '6+3'제도(자유수임계약 6년 후 3년간 감사인 지정계약) 및 선택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자산규모, 업종 등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한 필요 감사시간)가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안임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또한, 과다하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와 신임경영자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회사의 경우 정부감독당국에서 회계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외감법 개정으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이용하여 최근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재량적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과 달리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관심변수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산정 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상 직급별 투입시간을 직급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감사인 교체를 감독 당국에 의한 강제교체와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 교체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자유 교체의 경우, 감사인의 사임에 따른 자발적 교체와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해임하는 비자발적 교체로 구분하지 못했다.

【주요어】 품질관리검토시간, 감사인 교체, 감사보수, 경영자 교체, 비정상감사보수, 재량 발생액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동기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4
1.3 논문의 구성	6
II. 연구배경	7
2.1 국내 회계법인 현황	7
2.1.1 상위 10개 회계법인 인적 구성현황	10
2.2 회계법인과 개별감사팀의 관계	11
2.2.1 회계법인 내 직급별 역할	11
2.2.2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제도	12
2.2.3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검토부서와 개별감사팀과의 관계	12
2.3 감사인 교체	14
2.3.1 감사인 자유수입과 지정제도	14
2.3.2 감사인 교체 사유	16
2.3.3 감사계약체결	17
2.4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	18
2.5 감사인 감리제도와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규정	20
2.5.1 감사인 감리제도	20
2.5.2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시행	21
2.5.3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규정	22

Ⅲ. 선행연구의 검토	24
3.1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24
3.2 감사인 교체에 관한 연구	26
3.3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독립성에 관한 연구	30
3.4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32
3.5 선행연구와의 차이	39
Ⅳ. 연구 설계	40
4.1 연구가설의 설정	40
4.1.1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40
4.1.2 감사보수의 조절 효과	44
4.1.3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	46
4.2 표본의 선정	50
4.3 연구모형의 설정	52
4.3.1 <가설 I>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2
4.3.2 <가설 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5
4.3.3 <가설 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7
4.3.4 <가설 II>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8
4.3.5 <가설 I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9
4.3.6 <가설 I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1
4.3.7 <가설 III>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2
4.3.8 <가설 II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3
4.3.9 <가설 II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64

V. 실증분석	66
5.1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66
5.2 <가설 I> 검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교체사이의 관련성)	73
5.2.1 <가설 I-1> 검증	76
5.2.2 <가설 I-2> 검증	79
5.3 <가설 II> 검증(감사보수의 조절 효과)	82
5.3.1 <가설 II-1> 검증	85
5.3.2 <가설 II-2> 검증	88
5.4 <가설 III> 검증(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	91
5.4.1 <가설 III-1> 검증	94
5.4.2 <가설 III-2> 검증	97
5.5 실증분석 결과 요약	100
5.6 추가분석	104
5.6.1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 효과	104
5.6.2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의 결합 효과	107
VI. 결 론	112
6.1 연구결과의 요약	112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5

표 목 차

〈표 1〉 회계법인 수	7
〈표 2〉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BIG4 회계법인 점유율	8
〈표 3〉 회계법인 소송 현황	9
〈표 4〉 회계법인 인적 조직구성 현황	10
〈표 5〉 직급별 감사 수행업무	11
〈표 6〉 감사계약체결 지정 사유	15
〈표 7〉 비감사서비스의 분류	19
〈표 8〉 기관별 감리업무 수행내용	22
〈표 9〉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감리결과 조치	22
〈표 10〉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 사례	23
〈표 11〉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34
〈표 12〉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35
〈표 13〉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독립성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	37
〈표 14〉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38
〈표 15〉 연구 표본샘플	50
〈표 16〉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67
〈표 17〉 연구표본 구성 내역	69
〈표 18〉 차이 분석(T-test)	70
〈표 19〉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72
〈표 20〉 식(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21〉 식(I-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8
〈표 22〉 식(I-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1
〈표 23〉 식(I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4

〈표 24〉 식(II-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7
〈표 25〉 식(II-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0
〈표 26〉 식(II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3
〈표 27〉 식(III-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6
〈표 28〉 식(III-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9
〈표 29〉 가설검증결과 요약	102
〈표 30〉 식(IV)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6
〈표 31〉 추가분석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109
〈표 32〉 식(V)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11

그 림 목 차

〈그림 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18
〈그림 2〉 연구가설의 체계도	49
〈그림 3〉 추가분석 관심변수의 정의	107

I. 서 론

1.1 연구동기 및 목적

최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10월 수주산업을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6년 7월 부실감사 또는 분식회계의 감독 미비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와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20일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회계제도 개혁 T/F 검토를 거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¹⁾”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종합대책(案)의 내용 중,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는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핵심 감사제²⁾를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을 확보하여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감독당국 측면에서 주요 조치로는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적합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하고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등 일정 요건을 정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

1) 금융위원회에서 2017년 1월 20일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회계제도 개혁 T/F’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2)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술하는 제도로 회계업계에서 ‘중요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 인등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상장회사 감사계약의 경우 3년 계약 유지 및 자유수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 종합대책에는 향후 최대 6년 자유수임 이후 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회사는 6년 자유수임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선택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정된 감사인이 3년 연속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2017년 10월 31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³⁾으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82년 정부에서 개별기업별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던 '감사인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수임하는 '자유수임제도'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강제적으로 유지되던 감사인 독립성 확보체계가 근본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감사인 독립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이상호 2012). 이후 회계감사 보수의 담합 근거가 되던 '표준 보수표'가 1999년에 폐지되면서 수임료 자유화가 도입되고, 200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수가 1,00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인회계사의 일시 포화로 수임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이상호 2012).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천은 한국 회계감사의 강제 독립성 확보에서 자율 독립성 확보로 이행하게 되면서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이상호 2012). 관계 당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2003년부터 감사인의 감사 기간을 최소 3년 연속하여 보장하는 3년 감사인 유지제도와 6년

3)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연속감사 후에는 감사인을 강제 교체하는 6년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부작용 때문에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2009년 폐지되었지만,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던 이유는 감사인의 장기간에 걸친 감사가 감사품질을 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빈번한 교체 역시 감사품질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박연희와 정문기 2014). 교체 없이 계속 감사를 희망하는 감사인은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으로 감사인의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감사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신근식 등 2014). 이처럼 감사인의 유지 및 교체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의 감사인의 행태(보수적인 감사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로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재량 발생액을 감소시키려는 감사인의 보수적인 성향이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은 감사인 교체 직전·직후 연도의 재량 발생액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재량 발생액이 낮은 경우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로는 권혜진과 김명인(2010)은 3년 연속감사 기간이 끝난 후 감사인을 변경한 피감사회사들과 감사인을 재선임한 피감사회사들을 비교하였으며, 교체되기 1년 전과 2년 전에 피감사회사의 재량 발생액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감사인 교체에 재량 발생액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신근식 등(2014)은 피감사회사의 성과 조정재량발생액의 수준으로 측정한 보수적인 감사인의 감사행태와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량 발생액이 다른 연도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는 감사인 교체 여부를 감사인이 사전에 인지한 후 교체 직전 연도 감사 시에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고 해석하였다.

감사절차과정에서 수행되는 감사인의 노력인 감사시간과 특히 내부

심리시간(품질관리검토시간)에 대한 자료의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사품질과 감사시간 및 내부심리시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직급 및 직무별 투입 인원과 투입시간이 공시(외부감사실시내용)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대부분 연구결과,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는 음(-)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용수와 전규안 2016; 이영한과 장금주 2016) 감사인이 인지한 감사위험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배길수 등 2015; 안혜림과 최국현 2017).

본 연구는 상기 감사인 교체와 교체 직전 연도의 감사인의 행태(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감사인이 인지한 감사위험과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로 추론할 경우,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의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선행연구들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을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품질관리검토시간을 이용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감사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감독당국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감독당국의 최근 정책 방향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감사기간 동안 투입된 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그리고 감사기간과 분·반기검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는 반면에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절차를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와 분·반기검토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감사위험의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인 독립성의 대응치로 선행연구 되어 온 감사보수와 감사인 교체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선행 연구된 경영자 교체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기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5,744개의 전체표본 중 유효 샘플 4,580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변수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인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입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수기로 취합해야만 했던 점과 조절변수인 감사보수의 경우 상장회사만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어 분석대상을 상장회사로 제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IBM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샘플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들의 경영자(대표이사), 감사의견, 감사인(회계법인) 그리고 기업 재무데이터는 Fn-Guide의 금융시장데이터시스템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출하고자 하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와 감사보수는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상 감사보수를 수기로 취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국내 회계법인 현황, 회계법인과 개별감사팀의 관계, 감사인 교체,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 그리고 감사인 감리제도와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목적에 관해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에 관한 연구, 감사인 교체에 관한 연구,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독립성에 관한 연구,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수립한다. V장에서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한다. 추가분석으로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 효과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의 결합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VI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논의한다.

Ⅱ. 연구배경

2.1 국내 회계법인 현황⁴⁾

국내 2017년 3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5개사로 전기 157개사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이직과 신설 회계법인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최근 상장회사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강화로 비교적 감사위험이 낮은 소형회계법인에 대한 선호에 따른 회계사들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 등록공인회계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회계법인 설립요건(자본금 5억 원, 10인 이상)의 완화로 소형회계법인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회계법인 수

(단위: 사)

구 분		FY2015	FY2016(A)	FY2017(B)	증감(B-A)
소 속 등 록 회 계 사	100명 이상	9	10	11	+ 1
	30~99명	34	32	35	+ 3
	10~29명	98	115	119	+ 4
전체		141	157	165	+ 8

회계법인의 업무별 매출액 및 BIG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의 점유율은 <표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2016사업연도 회계법인 총매출액은 2조 6,734억 원으로 전기 대비 2,098억 원(8.5%) 증가하였다. 세부업무별로는 회계감사가 전체 매출액의 33.5%(8,956억 원)를 차지하였으며 세무는 32.6%(8,709억 원), 경영자문은 28.5%(7,620억 원), 기타 수입은 전체 매출액의 5.4%(1,449억 원)를 차지하였다. 세부업무별로 회계

4) 제 2017-36호 [통권 951호] 금융감독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감사 매출액은 소폭(5.0%) 증가하였으나 비감사수입은 전기 대비 10.4%로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회계법인의 총매출액 2조 6,734억 원 가운데 BIG4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1조 3,485억 원)로 전기 대비 0.9%p 감소하였으며 회계감사, 세무부문 등의 분야에서는 전기 대비 BIG4 회계법인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회계 시장의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BIG4 회계법인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된 이유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

<표 2>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BIG4 회계법인 점유율

(단위: 억 원, %, %p)

업무별 매출액		FY2014		FY2015		FY2016		전기대비 변동		
		금액	구성 비율	금액	구성 비율	금액	구성 비율	금액	증가율	구성 비율
전체 회계 법인	감 사	7,870	35.1	8,531	34.6	8,956	33.5	425	5.0	-1.1
	세 무	6,998	31.2	7,952	32.3	8,709	32.6	757	9.5	0.3
	경영자문	6,394	28.5	6,916	28.1	7,620	28.5	704	10.2	0.4
	기타	1,139	5.1	1,237	5.0	1,449	5.4	212	17.1	0.4
	합 계	22,400	100.0	24,636	100.0	26,734	100.0	2,098	8.5	
BIG4 회계 법인	감 사 (점유율) *	4,456 (56.6)	37.3	4,671 (54.8)	37.0	4,728 (52.8)	35.1	57 (-2.0)	1.2	-1.9
	세 무 (점유율) *	2,731 (39.0)	22.9	2,963 (37.3)	23.5	3,142 (36.1)	23.3	180 (-1.2)	6.1	-0.2
	경영자문 (점유율) *	4,644 (72.6)	38.9	4,907 (71.0)	38.9	5,511 (72.3)	40.9	603 (1.4)	12.3	2.0
	기타 (점유율) *	117 (10.2)	1.0	90 (7.3)	0.7	103 (7.1)	0.8	13 (-0.2)	14.4	0.1
	합 계 (점유율) *	11,947 (53.3)	100.0	12,631 (51.3)	100.0	13,485 (50.4)	100.0	853 (-0.9)	6.8	(-)

* 점유율은 전체 회계법인에서 BIG4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3년간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재판이 종료된 소송 사건은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의 소송 사건에서 회계법인이 패소 또는 화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은 총 225억 원이었다. 2016사업연도에 재판이 종료된 소송 사건 수는 총 31건으로 승소 건수는 25건, 패소 건수는 6건이며, 패소로 총 16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였다. 한편, 2017사업연도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1건으로 대상 회계법인은 20곳이며 총 소송액 2,974억 원이다.

<표 3> 회계법인 소송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FY 2015	FY 2016	FY 2017	누계
소송종결건수(피소종결건)	9	33	31	73
- 패소(일부패소 포함)	1	7	6	14
- 화해 등	2	2	-	4
- 승소(기각, 각하 포함)	6	24	25	55
손해배상건수	3	9	6	18
손해배상금액	14	47	164	225
소송진행건수	-	84	81	-
소송진행금액	-	1,925	2,974	-

* 소송진행건수는 2015사업연도('16.3월) 사업보고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사업보고서상 의무기재사항이 아니었음

2.1.1 상위 10개 회계법인 인적 구성현황⁵⁾

2017년 3월 말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회계법인의 인적 조직구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4개의 회계법인(BIG4)과 그 외 회계법인(Non-BIG4) 사이에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 상위 4개의 회계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경우 경력 3년 미만 공인회계사수가 전체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의 29%~46%를 차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위 4대 회계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법인들의 경력 3년 미만 공인회계사수의 구성 비중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품질관리부서 소속 공인회계사수도 상위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소속된 전체 공인회계사수 대비 4%~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 외 회계법인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상에 소속된 공인회계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었다.

<표 4> 회계법인 인적 조직구성 현황

(단위 : 명, 억 원)

회계법인명	공인회계사수			품질관리부서	매출액
	경력 3년 이상	경력 3년 미만	경력 3년 미만 비중		
삼일회계법인	1,355	554	29%	122	5,040
삼정회계법인	756	598	44%	80	3,191
안진회계법인	688	404	37%	42	3,090
한영회계법인	441	376	46%	49	2,164
대주회계법인	280	26	8%	-	651
삼덕회계법인	362	6	2%	-	596
한울회계법인	154	11	7%	-	412
이촌회계법인	111	9	8%	-	381
신한회계법인	187	3	2%	-	368
안세회계법인	117	0	0%	-	363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사업보고서 참조하였다.

2.2 회계법인과 개별감사팀의 관계

2.2.1 회계법인 내 직급별 역할

회계법인 내 직급별 역할은 <표 5>와 같으며 피감사회사의 규모, 업종, 재무상황, 초도감사 등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에 따라 참여하는 감사팀원의 수와 역할별 수행하는 직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업무수행이사는 Engagement Leader로써 감사보고서의 위험(Risk)과 감사품질(Quality)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최종 책임을 진다. 한편,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에서 신규감사계약의 체결과 기존 감사계약의 유지, 개별감사계약의 수익성 증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표 5> 직급별 감사수행업무⁶⁾

구분	직급	감사수행업무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Manager이상	.감사보고서 발행 전 개별감사팀이 수행한 감사절차 검토 .감사의견형성 및 감사관련 ISSUE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수행이사 (담당이사)	Partner/ Director	.감사위험과 감사품질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 .감사보고서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승인 .자원의 배정 .피감사회사(경영자)와 의사소통
등록 공인회계사	Director/ Sr.Manager/ Manager	.업무일정, 자원배분 및 관리 .피감사회사 회계부서와 의사소통 .업무수행이사 보좌 .실무적인 차원의 총괄적 업무지시 및 검토수행 .감사보고서 주요 Issue에 대한 검토
	Sr.Manager/ Manager/ Sr.Associate	.현장 업무 총괄수행 .감사팀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검토 .거래처 실무자들과 감사세부사항 의사소통 .감사보고서의 초안 작성
	Manager/ Sr.Associate	.위험이 높은 Key Risk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수행
수습 공인회계사	Associate	.비교적 위험이 낮은 Low Risk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수행

6) 류승우 등(2015)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였다.

2.2.2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제도

증권집단소송제와 같은 잠재적 소송위험과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은 조직차원 및 개별감사 차원의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할 필요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절차 가운데 중요한 통제절차가 내부심리제도이다(류승우 2010). 이러한 외적 규제에 의한 필요성 외에도 내부심리제도를 통해 회계법인은 전반적인 위험 관리와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내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적절한 내부심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류승우 2010).

내부심리제도는 사전심리제도와 사후심리제도로 구분된다. 사전심리제도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팀 내에서 지시, 감독, 검토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별감사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내부심리자의 독립된 심리 이후에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후심리제도는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회계감사기준이 전반적으로 준수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중요 감사위험 항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사절차가 수행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사후 검토하는 절차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2.3 회계법인내 품질관리검토부서와 개별감사팀과의 관계

감사업무는 감사인의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품질관리검토자는 감사업무가 마무리된 후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여 개별감사팀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 사항들을 평가하고, 적합한 감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중요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업무수행이사)와 논의한다. 다음으로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는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발생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이창우 등 2015).

품질관리검토업무는 통상 현장 감사업무 및 감사의견 형성절차가 종료되고 감사업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품질 확보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검토업무에 대한 충분한 감사자원의 투입은 높은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이영한과 장금주 2016). 품질관리검토업무는 감사계약을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심리부서의 공인회계사들이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계약의 수익을 책임지며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의 입장에서는 품질관리검토업무에 대한 많은 시간 투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하향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감사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식별 가능한 감사투입노력인 실제 현장 감사 투입시간이 아닌 감사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투입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당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가 그 투입의 가치에 대하여 저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품질관리검토업무에 대하여 자원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이영한과 장금주 2016).

회계법인과 개별감사팀은 대리인 관계에 있으며 개별감사팀(대리인)은 감사계약 유지와 같은 영업상의 이유나 감사대상회사와의 친밀한 사적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품질을 타협할 유인을 가진다(Newman and Novoselov 2009). 또한, 소수의 감사고객을 가진 개별감사팀에 비해 회계법인은 다수의 감사고객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일부 감사고객 상실에 따른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감사실패에 따른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다(Newman and Novoselov 2009).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억제하고자 회계법인은 내부심리실을 설치하여 개별감사업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개별감사팀과 내부심리실의 유인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정석우와 정광화 2015).

2.3 감사인 교체

2.3.1 감사인 자유수임과 지정제도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란 동일 회사와 감사인 간에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 교체제도는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 외에도 감사인 지정과 감사 수행 내에서 구성원을 교체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이며,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고, 감사 구성원의 교체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⁷⁾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 당시 강조된 것은 감사인의 장기간 계속 감사로 인한 부실감사와 기업과의 유착을 차단하고 신임 감사인으로 하여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포함하여 재무보고품질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투명 감사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본 규정은 감사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감사인 교체 선임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감사보수의 경쟁 하락에 따른 감사품질의 저하 등 부작용에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박영진 2012). 동 제도는 2009년 2월 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면제되기로 의결됨에 따라 K-IFRS가 전면 시행된 2011년 이후에는 폐지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7년 1월 20일 회계학회 연구용역을 기초로 회계제도 개혁 T/F 검토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을 발표하였으며 동 종합대책에는 향후 최대 6년 자유수임 이후 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제교체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감사인 자유수임제도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열거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감독당국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7) 감사담당 이사의 경우 5 년마다(상장기업은 3 년마다)교체하고 있으며, 3 년마다 감사 보조자의 2/3 를 교체한다.

<표 6> 감사계약체결 지정사유

외감법 제4의3 및 외감법 시행령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법 상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고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이 아닌 경우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우회상장 포함)
감사인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의 합병 등 현저한 변화에 불구하고 감사보수 관련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200% 초과이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상장법인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기업 중 주거래은행이 지정을 요청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 (거래량 부진 제외)

감사인이 지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선임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중 감사계약체결 기준일 현재 관리 종목인 경우(다만, 거래량 부진은 제외), 해당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우회상장 포함)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등이 있다.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순서가 결정되며 총 자산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차례로 대응하여 지정한다. 지정 시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제한 감사인은 지정이 배제된다.

2.3.2 감사인 교체사유

감사인으로서는 감사를 너무 원칙적으로 수행한 경우 피감사회사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도 어렵지만, 너무 느슨하게 감사를 수행한다면 여러 가지 부실감사와 관련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손성규와 김연화 2005). 또한, 법정소송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감사인으로서는 너무 원칙으로 감사를 수행하여 교체를 당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감사과정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임계치에서 본인의 위치를 결정한다(손성규와 김연화 2005). 일반적인 감사인 교체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감사위험 및 소송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감사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 2) 감사인의 업무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다.
가령, 과거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감사 수행과정에서 권위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감사인을 교체할 수가 있다.
- 3) 감사인이 너무 보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4) 최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다.
- 5) 정부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강제 지정되어 감사인이 교체될 수 있다.

감사인이 교체되리라는 것을 알고 1), 2), 4), 5)의 이유로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지면 후임 감사인에 의해서 회계감사과정의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기 위하여 현행 감사인은 보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 2), 4), 5)와 같이 현행 감사인이 교체당할 위기에 직면할 경우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해서 더욱 보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동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3)과 같이 기존 감사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과 입장이 상반되고 감사인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진은 보수적인 기존의 감사인을 보다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하려고 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손성규와 김연화 2005).

2.3.3 감사계약체결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8년 사업연도까지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0월 31일 외감법 개정으로 2019년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무효화가 되고, 정부감독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인 선임기한 내 미선임한 회사,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회사, 감사인에 대한 선임보고를 누락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 그리고 검찰 고발에 의한 벌금 등의 형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8)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림 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2.4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함께 거론되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이다.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근간이 되는 요인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한 회계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피감사회사의 다른 용역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의견을 좋게 주는 경우(Self-interest threat), 피감사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Familiarity),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경우(Self-review threat)이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규정은 회계감사기준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과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수준으로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안정적인 회계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SEC와 같이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결산법인부터 거래소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수임료, 감사소요시간, 용역계약내용 및 용역수임료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손성규 2006). 나아가 정부는 자기감사위험(self-audit threat)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

회계사법을 개정하여 외부감사 계약 기간에 열거된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이 기장을 대리하는 경우,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어 충실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에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특매품(loss leader) 현상으로 이것은 감사인이 감사를 특매품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사수입료를 낮게 책정하여 고객에게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손성규 2006). 이러한 감사수수료의 저가책정(low-balling)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행 회계감사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는 <표 7>과 같이 분류된다.

<표 7> 비감사서비스의 분류⁹⁾

업무종류	내 용
수행이 금지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피감사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의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또는 그 계약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감사 등의 동의를 필요한 비감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 자금조달 관련 업무 .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감사회사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의견제시 . 투자자문 업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 평가, 또는 개선방안의 제시
감사등과 협의가 필요한 비감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정 등 세무관련 업무 . 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 기타 비감사업무

9) 회계감사기준 200.4.5.2~4(2007.12)

회계감사기준 200.4.5.3에서는 “특히 감사 등의 동의를 필요한 비감사업무에 대해서는 법규상 금지된 업무는 아니지만,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 영향이 중대한 비감사업무로서 감사인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하여 독립성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회사의 감사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감사업무 담당 사원과 비감사업무 담당 사원 간에는 과거 일정 기간 및 비감사업무 수행완료일까지 인적교류가 없어야 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내부적 차단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감사인 감리제도와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규정

2.5.1 감사인 감리제도

외감법 제15조에 의한 감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로 구분된다. 최초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었는가를 정부감독당국이 재차 점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 본연의 회계투명성이 보다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감리제도의 운영방법이나 운영내용이 감사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면서 일차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심사감리를 시행하고,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감사인에 대하여도 정밀감리를 시행하는 단계적 감리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상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적으로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실제 감리를 통해 위반혐의가 적발될 경우 사후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과 외부

감사인을 동시에 감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이성희 2009).

품질관리감리는 사전적 회계감독제도로서 적정한 감사보고서의 발행을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 등을 지시하는 제도이다. 품질관리감리의 대상은 품질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개별 감사업무의 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로 구분된다. 품질관리 제도는 국제품질관리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ISQC)을 준거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한 6가지 구성요소¹⁰⁾가 적절히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이성희 2009). 개별감사업무의 품질관리감리절차는 감사계획단계,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및 평가단계, 감사수행단계의 감사증거 수집과 문서화, 감사완료단계 및 연결감사업무수행에 대한 감사절차 가운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 위주로 점검한다.

2.5.1.1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감리시행

금융감독원은 외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업무(감사보고서 감리)¹¹⁾를 수행하여 왔으며, 회계감독의 공적 감독방향으로서의 국제적 전환 추세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왔던 ‘감사인 품질 관리감리업무’를 2007년부터는 상당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은 시장 영향력이 큰 회계법인¹²⁾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있다(이재은 2011).

10) 경영진의 운영책임, 윤리적 요구사항(독립성 포함), 업무의 수입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감시)

11) 외감법 15조 1항 및 동 시행령 8조 1항

12) 상장회사 총수의 1% 이상을 감사하거나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30인 이상인 회계법인 등(금융감독원 2010)

<표 8> 기관별 감리업무 수행내용

감리구분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	
감리대상	상장법인과 금융회사	비상장법인	주요 감사인	기타 감사인
감리실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재조치·개선권고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는 금액의 중요성,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에 대한 주요 제재조치는 <표 9>와 같다.

<표 9>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감리결과 조치

감사인	공인회계사	회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비 건의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건의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제외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참여 제한	임원해임권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참여제한	감사인 지정
특정회사 감사업무참여 제한	직무연수 명령	검찰고발 및 통보 등
검찰고발 및 통보 등	검찰고발 및 통보 등	

2.5.2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규정

2014년에 개정된 외감법 제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¹³⁾에서는 2014 회계연도부터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포함한 직급 및 직무별 감사시간 내역과 주요 감사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13)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감사보고서 작성)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감사보고서 첨부서류) ① 법 제7조의 2 제3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소요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

<표 10>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 사례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식회사 ○○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 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	분·반기검토												
	감사												
	합계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일
	주요내용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 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일	명	일	명	
재고자산실사 (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금융자산실사 (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실사(입회)대상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 사조 회	
	기타조회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회				
	수행시기					

Ⅲ. 선행연구의 검토

3.1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해외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감사시간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을 대상으로 한 표본 실증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실증연구들은 실험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것이다. Bedard and Johnstone(2004)은 회계법인 수준의 품질관리활동으로 감사수행팀 이외의 별도의 제3자가 수행하는 품질검토절차(quality control review procedure)와 전사적회계자문부서(central accounting consulting units)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검토자 및 품질관리검토절차와 관련 하여,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은 감사위험평가 절차를 향상하고(Ayers and Kaplan 2003; Tucker and Matsumura 1997), 감사테스트 수준을 더 높이도록 한다고 보고하였다(Matsumura and Tucker 1995). 또한, 품질관리검토자는 감사위험이 큰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 상 문제점을 더 많이 발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sare et al. 2005).

류승우 등(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내부심리시간을 직접 관찰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석우와 정광화(2015)도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시간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정석우와 정광화(2015)의 연구는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시간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감사보고 시차를 내부심리활동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감사품질과 회계법인의 내부심리기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길수 등(2015)은 외부감사실시내용 상 보고되는

2014년의 상장기업 품질관리검토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전기재량 발생액 절댓값이 높을수록 총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배길수 등(2015)은 높은 감사위험 하에서 감사인이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을 증가시킬 때 시간당 감사보수로 측정되는 감사 수익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울러 분석하였는데, 감사위험이 높을 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증가하면 시간당 보수가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영한과 장금주(2016)의 연구는 2014년과 2015년의 상장 회사와 비상장회사들의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실내용 상 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을 분석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사업위험수준과 상장여부에 따른 감사의 제도적 환경, 그리고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EQR(Engagement Quality Review)의 투입시간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피감사회사의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록, 초도감사인 경우 그리고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비교하면 유의하게 품질관리검토투입시간이 높았다.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한 감사품질관리 경향은 BIG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는 감사시간이 감사품질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인의 각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품질에 미치는 감사시간의 영향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감사시간 가운데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의 감사시간 그리고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만이 유의적으로 재량 발생액을 감소시켜서 감사품을 제고시켰다. 안혜림과 최국현(2017)은 전체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검토시간 비중이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실제이익조정의 세 가지 측정치인 비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 비정상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 각각 품질관리검토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비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았다.

3.2 감사인 교체에 관한 연구

감사인 교체에 대한 원인과 동기에 관한 연구는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황의 악화, 의견구매 동기, 대리인비용, 비적정전기감사의견,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의 의견불일치, 경영자의 교체 등 여러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감사는 대리인 이론 하에서 소유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 상충을 감소시켜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경영자는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수행함으로써 소유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경영자가 제시한 재무보고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자는 대외 신뢰성이 높은 외부감사를 선정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고, 이러한 필요는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품질이 차별화되어 있고 이를 경영자가 식별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높은 대리인비용을 가진 기업의 경영자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김은 2009). Francis and Wilson(1988)은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와 대리인비용의 발생 수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리인 비용의 발생 수준의 대용치인 경영자의 주식분산 정도, 주식소유비율, 경영자의 주식보상계약 유무,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계획 여부 등의 대상변수 중 주식의 분산도 및 부채 수준이 높거나 또는 경영자에 대한 주식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감사인이 Non-Big8에서 Big8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채권자, 주주, 제3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소하는데 있다는 점, 특히 미국에서 이와 같은 대리갈등이 심각해질수록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DeFond (1992)는 감사품질의 차원과 대리인 이해상충의 정도에서 감사인 교체 원인을 조사하는데, 발생계정, 부채비율, 경영자의 소유지분을 등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설정하여 감사인 교체 전·후기간의 비교를 통하여 경영자들이

대리인비용의 정도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감사인을 교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의 소유지분율이 낮거나 발생 계정이 큰 경우, 그리고 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감사인 교체는 더 높은 감사품질을 유인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정문종(199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감사인 교체를 통해 피감사회사가 의견구매를 시도하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Chow and Rice(1982), Smith(1986)는 한정 의견과 감사인 교체와의 상호관련성에 관하여 연구하는데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보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이후 연도에 감사인을 더 빈번하게 교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준화와 왕현선(2005)은 경영자는 협조적인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 초기에 이전 감사인을 해임하고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이 있다고 추론하고, 1987년부터 2003년까지 16년 동안 경영자가 교체된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경영자가 변경되었을 때 임기 초기에 감사인을 교체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한 감사인 교체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교체 현상은 3년간 감사인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피감사회사의 특성에 따라 감사서비스의 성격은 영향을 받는다. Schwartz and Menon(1985), Dhaliwaletal et al.(1993)은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이 감사인 교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무상황이 악화될수록 경영자는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기 위해 분식 동기가 강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자와 감사인 사이의 이해충돌이 증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감사인을 탐색하게 되고, 결국 감사인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연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국내연구로는 배청홍(1997), 손성규와 이은철(2005)의 연구결과 경영자의 변경, 매출액증가율, 증가율, 주당이익감소율 등이 감사인 변경의 요인들임을 발견하였으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성과가 낮을수록, 당기손손실을 보

고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ye(1991), Antle and Nalebuff(1991)는 감사인 교체가 GAAP에 의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eAngelo(1982)는 가스 및 석유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에 대한 동기를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 피감사회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회계방법에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변경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DeFond and Jiambalvo(1993)는 감사인 교체 표본을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감사인을 교체한 표본과 단순감사인을 교체한 표본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견 차이에 의해 감사인을 변경한 40개 표본과 단순감사인을 교체한 40개 대응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의견 차이에 의해 감사인을 교체한 표본집단은 단순 감사인 교체표본 집단보다 이익이 감소하며 부채비율이 높고, 낮은 감사 품질을 제공하는 Non-Big8 회계법인으로 교체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감사인 교체는 보고이익을 늘리려는 경영자가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감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DeFond and Jiambalvo(1993)은 기업이 보고이익을 늘리려고 할 때에 감사인은 감사수행과정에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인 교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Krishnan(1994)은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이유는 감사의견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임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임감사인이 중요성 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적용할 경우 이에 불만을 품은 기업이 보다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는데, 연구결과 예측과 일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감사인 교체 2년 전과 직전연도에는 재량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체 직전연도와 교체연도 간에는 이와 반대로 재량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임감사인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감사인 교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는 박종일 등(2007)의 연구결과, 감사인 비교체 표본과 비교할 때 감사인 교체표본은 교체연도에 유의한 양의 재량 발생액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서민정 등(2007)은 감사인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하는 경우에 연속 감사 기간이 끝난 후 감사인 교체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권혜진과 김명인(2010)은 3년 감사계약이 종료된 이후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들과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들을 비교한 결과, 교체 직전 1년과 2년에 교체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다. 즉, 감사인 교체 여부에 재량 발생액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신근식 등(2014)은 피감사기업의 성과조정 재량 발생액의 수준을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행태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감사인 교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량 발생액이 다른 연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인이 사전에 감사인 교체 여부를 인지한 후 교체 직전 연도에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밖에도 최기호 등(2004)은 산업 내 감사인 간의 경쟁 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회계감사시장의 경쟁 정도가 치열할수록 감사인 교체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중길과 최애화(2011)는 3년 연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하여 감사인 특성에서 감사인 평판, 기업특성에서 경영자 교체 그리고 감사특성에서 감사보수를 선정하여 감사인 교체의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인 교체에 감사인의 평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감사인 교체 시 각각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을 선호하였다. 감사보수의 감소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는 증가하였으며 경영자 교체 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감사인 교체에 더 민감하였다.

3.3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독립성에 관한 연구

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된 오류 및 특정 사항을 보고할 확률로 정의하고, 감사품질이란 감사기술수준(피감사회사의 회계 시스템에서 오류가 존재할 때 이를 발견하는 확률)과 감사인의 독립성 결합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DeAngelo 1981; Watts and Zimmerman 1983).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연구에 직접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 또는 대용치를 이용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고객별 개별 감사보수, 비감사보수 또는 총감사보수의 절대값이나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보수 크기의 절대값을 활용하여 비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개별기업 수준에 국한되지 않고 회계법인 수준에서의 특정 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회계법인의 경제적 의존도는 회계법인의 전체 수입 중 특정 고객기업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간접적인 대용치로 고객 기업의 매출액(총자산)을 이용하였다(Reynolds and Francis 2001).

S&P 500에 속하는 대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발생액과 비감사보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감사보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총발생액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Dee et al. 2002).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기업의 중요도(decile rank of nonaudit fee)와 절대값 재량 발생액 또는 재무제표 소급 재수정(restatement)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Ferguson et al. 2004). Gul et al.(2003)과 Antle et al.(2002), Choi et al.(2006)은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파트너 차원에서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파트너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동발생액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Big4 파트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피감사기업에 대하

여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지만, Non-Big4 파트너는 상장 및 비상장 중요고객에 대하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 et al. 2012). 반면, 피감사기업의 경제적 중요도나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Chung and Kallapur 2003; Choi et al. 2006; Hope and Langli 2010)

국내연구에서도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김명인 등(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피감사회사의 보수주의 수준이 감소한다고 보고함으로써, 피감사회사에게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지급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광욱 등 (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감사보수를 초과하여 피감사회사가 지급하는 비정상감사보수는 비정상지대(idiosyncratic rent)로 피감사회사와의 높아진 경제적 유대관계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감사품질이 낮은 재무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확열과 박미영(2010)의 연구결과, 비정상감사보수와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우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나 피감사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최근 연구로서 김명인 등(2013)은 Khan and Watts(2009)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보수주의 대응치를 측정하고 연구대상기간을 12년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관련 연구보다 길게 설정하였는데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비정상감사보수가 늘어날수록 피감사회사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 사이에 유의적 관계가 없다(박종일 등 2003; 권수영 등 2004; 최종학 등 2005)는 연구결과도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3.4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영자 교체와 전문경영인 선임 등이 제시되면서 경영자 교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신임 경영자의 회계의사결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Big Bath¹⁴⁾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현상을 분석, 신임경영자 영입유형과 전임경영자 퇴임유형으로 각각 구분한 소표본의 이익조정 현상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Murphy and Zimmerman(1993)은 경영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신임경영자가 기존경영자가 교체되는 경우에 이익을 하향 조정한다고 보고 하였다. Murphy and Zimmerman(1993)의 연구를 확장하여 경영자 교체를 정상적 교체와 비정상적 교체로 구분하고,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보고이익을 더 많이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연구결과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될 때 신임경영자가 부임 첫해에 가급적 비용을 많이 인식하여 이익을 줄이는 Big Bath 현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Pourciau 1993).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에 따른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한 결과,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에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신임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더욱 하향 조정한다고 보고하였다(Peter Wells 2002).

Big Bath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이강일과 천종률(1999)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서도 Big Bath 현상이 존재하며 경제불황기 이러한 Big Bath 크기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최고경영자 교체를 공시한 250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나타나는 신임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한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 전체표본에 대한 재량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14) 기업의 CEO 교체기에 전임자의 부실을 떨어내는 경영전략을 이르는 말이다.

(-)의 값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신임경영자가 Big Bath를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이아영 등 2007).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고경영자 교체가 이루어진 239개 표본기업을 신임경영자 영입유형으로 구분한 소표본을 대상으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 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 교체 시 이익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외부에서 영입된 신임경영자가 부임 첫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영 등 2009).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 동안 317개의 표본기업을 4개의 교체유형으로 구분한 각 소표본을 대상으로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이익조정측정치들의 평균이 0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일부 교체유형에서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곽영민과 최종서 2011). Type II (자발/외부)의 경우 외부 영입된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양(+)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반면 Type IV(강제/외부)의 경우 이익조정 현상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곽영민과 최종서 2011).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167개의 전체표본과 각 소표본을 대상으로 Kothari et al.(2005)의 모형으로 측정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현상을 각각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외부 영입된 신임경영자가 내부 승진된 신임경영자보다 교체연도에 음(-)의 이익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동석과 안창호 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자가 교체된 기업일수록 교체연도 성과의 책임을 전임경영자에게 돌려 신임경영자가 Big Bath하려는 유인이 강한지 검증하였다(고대영과 안미강 2017). 분석결과, 전원 경영자 교체가 이루어져 기존의 경영자가 사내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가 전원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되었을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대영과 안미강 2017).

<표 11>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Matsumura and Tucker(1995)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은 감사테스트수준을 더 높임.
Ayers and Kaplan(2003), Tucker and Matsumura (1997)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은 감사위험평가 절차를 향상시킴.
Asare et al.(2005)	품질관리검토자 감사위험 높은 업무에서 감사절차상 미비점을 더 많이 발견.
류승우 등(2015)	Big 4에 속한 특정회계법인의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감사투입시간이 늘어날수록 피감사회사의 재량 발생액이 감소되어 감사품질이 제고. 내부심리절차가 감사에 추가적으로 재량 발생액을 감소시켜 감사품질을 제고.
정석우과 정광화(2015)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시간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감사보고서시차를 내부심리활동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회계법인의 내부심리기능과 감사품질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
배길수 등(2015)	감사위험(전기 또는 당기재량발생액 절댓값)이 높을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대체로 높음.
이영환과 장금주(2016)	피감사회사의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록, 초도감사인 경우 그리고 상장 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EQR 투입시간이 높음. EQR을 통한 감사품질관리 경향은 BIG4 회계법인에서 더 강함.
김용수와 전규안(2016)	감사투입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급별로 서로 상이하며, 직급별 감사투입시간 중에서 품질관리검토자의 감사투입시간과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만이 유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킴.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은 주로 4대회계법인의 경우와 기말감사인 경우에 나타남.
안혜림과 최국현(2017)	비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2>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DeAngelo(1982)	피감사회사는 자신이 선호하는 회계방법에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하려는 경향이 있음.
Chow and Rice(1982), Smith(1986)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보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이후연도에 감사인을 자주 교체하는 경향이 있음.
Francis and Wilson(1988)	대리갈등이 심화될수록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을 선호.
Dye(1991), Antle and Nalebuff(1991)	감사인 교체가 GAAP 에 의한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모형을 제시.
Schwartz and Menon (1985), Dhaliwaletal et al.(1993)	재무상황이 악화될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영자와 감사인사이의 이해충돌이 증대.
DeFond and Jiambalvo(1993)	기업이 보고이익을 늘리려고 할 때에도 감사인은 감사수행과정에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인 교체가 발생.
DeFond and Jiambalvo(1993)	단순감사인 교체기업보다 의견불일치에 의해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이익이 감소하며, 부채비율이 높고, 감사품질이 낮은 Non-Big8 회계법인으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음.
DeFond(1992), 정문종(1997)	회사의 경영자의 소유지분율이 낮거나 부채수준이 높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더 높은 감사품질로 이어짐.
배청홍(1997)	경영자의 변경, 매출액 증가율, 증가율, 주당이익감소율 등이 감사인 변경의 요인.
Krishnan(1994), DeFond and Subramanyam(1998)	감사의견 때문이 아니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은 전임 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인 회계처리에 기인.
최기호 등(2004)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정도가 치열할수록 감사인 교체의 확률이 높아짐.

<표 12>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요약(계속)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노준화와 왕현선(2005)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현상발생. 상장기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
손성규와 이은철(2005)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낮을수록,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손성규와 김연화(2005)	감사인을 교체한 표본과 재선임한 표본을 대상으로 교체전·후 재량 발생액의 차이분석. 감사인 교체와 보수적인 감사수행이 관련이 있음.
서민정 등(2007)	감사인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하는 경우에 연속감사기간이 끝난 후 감사인 교체가 증가.
박종일 등(2007)	감사인 교체표본은 감사인 비교체표본과 비교하여 교체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재량 발생액 값을 가지고 있음.
권혜진과 김명인(2010)	3년 감사인 유지제도가 종료된 후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들과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들을 비교한 결과, 1년 과 2년 에 교체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
김중길과 최애화(2011)	감사인 교체에 감사인의 평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감사인 교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형회계법인을 선호. 감사보수의 감소율이 클수록 감사인 교체는 증가. 경영자 교체 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감사인 교체에 더 민감함.
신근식 등(2014)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재량 발생액이 다른 연도보다 유의적으로 더 낮았음.

<표 13>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독립성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Dee et al.(2002)	SandP500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감사보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량발생액과 총발생액이 많았음.
Ferguson et al.(2004)	감사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중요도와 절대값 재량발생액 또는 재무제표 소급재수정과 양(+)의 관계가 있음.
Chi et al.(2012)	감사파트너 차원에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Big4파트너의 경우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찾지 못함. Non-Big4파트너의 경우 독립성에 영향을 미침.
권수영 등(2003)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량 발생액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남. 대형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비감사서비스로 인하여 이익조정이 증가한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주장.
박종일 등(2003)	1999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와 재량적 발생액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
김명인 등(2008), 김명인 등(2013)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정상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재무제표의 보수성은 감소함.
오광욱 등(2008)	비정상감사보수는 비정상지대(idiosyncratic rent)로 피감사회사와의 높아진 경제적 유대관계에 의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됨.
김확열과 박미영(2010)	비정상감사보수와 감사보수가 늘어날수록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감소됨.
정우성(2010)	감사인의 독립성에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음.

<표 14>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요약

연구자	주요연구내용
Murphy and Zimmerman(1993)	경영성과가 저조한 이유로 경영자가 교체되는 경우 신입경영자는 이익을 하향 조정.
Pourciau(1993), Peter Wells(2002)	신입경영자는 전임경영자가 비정상적으로 교체될 때 부임 첫 해에 가능한 비용을 많이 인식하여 이익을 축소시키는 Big Bath 현상이 존재.
이강일과 천종률(1999)	국내에서도 Big Bath를 통한 이익조정 현상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 경제불황시 Big Bath의 크기가 증가.
이아영 등(2007), 이아영 등(2009)	신입경영자의 회계선택을 통한 재량적 이익조정 현상을 성과대응 재량 발생액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에 나타나는지를 검증. 최고 경영자 교체연도에 신입경영자가 Big Bath를 수행.
곽영민과 최종서(2011)	성과대응재량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의 대응치의 평균이 0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자발적 교체로 외부 영입된 신입경영자는 교체연도에 양의 이익조정을 수행. 반면 강제 교체에 의해 외부 영입된 신입경영자의 경우 이익조정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심동석과 안창호(2015)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연도의 이익조정 현상을 성과대응 재량 발생액을 활용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 내부 승진된 신입경영자보다 외부 영입된 신입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음의 이익조정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대영과 안미강(2017)	경영자가 전원교체 되어 기존경영자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가 전원 전문경영인으로 교체되었을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3.5 선행연구와 차이점

대부분의 해외 및 국내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연구들의 공통점은 재량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감사인 교체에 관한 원인 및 동기와 관련한 연구들로 감사대상회사의 특성(대리인비용, 재무상황악화, 전기비적정의견, 의견구매 등)과 감사 대상 회사와 감사인과의 관계(최대주주 및 경영자교체, 의견불일치) 그리고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행태에 관하여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재량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최초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들(DeFond and Subramanyam 1998; 권혜진과 김명인 2010; 신근식 등 2014)에서는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대응변수로 재량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투입한 시간(품질관리검토시간 등)을 사용하였으며 감사 기간 투입된 시간과 분·반기검토 기간 투입된 시간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품질관리검토시간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이 특정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검토시간 투입자료를 이용하거나, 1년 또는 2년 동안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한 것과 달리 분석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 및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최초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최근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IV. 연구 설계

4.1 연구가설의 설정

4.1.1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DeFond and Jiambalvo(1993)는 기업이 보고이익을 늘리려고 할 때 감사인은 감사수행과정에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인 교체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Krishnan(1994)은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하는 이유는 감사의견 구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임감사인의 지나친 보수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임감사인이 중요성 기준 등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할 경우 이에 불만을 품은 기업이 보다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는데, 연구결과 예측과 일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감사인 교체 2년 전과 직전연도에는 재량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교체 직전 연도와 교체연도 간에는 이와 반대로 재량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임감사인의 보수적 회계처리는 감사인 교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는 박종일 등(2007)의 연구결과, 감사인 비교체 표본과 비교할 때 감사인 교체표본은 교체연도에 유의한 양의 재량 발생액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서민정 등(2007)은 감사인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하는 경우에 연속감사기간이 끝난 후 감사인 교체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권혜진과 김명인(2010)은 3년 감사계약이 종료된 이후 감사인을 교체한 회사들과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들을 비교한 결과, 교체직전 1년과 2년에 교체기업의 재량 발생액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재량 발생액의 수준에 따라 감사인 교체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 신근식 등(2014)은 피감사기업의 성과조정 재량 발생액의 수준을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행태의 대응변수로 사용하여 감사인 교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량 발생액이 다른 연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감사인 교체는 보고이익을 늘리려는 경영자가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감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는 감사인의 노력인 감사시간 투입량으로 측정될 수 있다. 특히, 품질관리검토부서의 감사시간 투입은 감사위험평가 절차를 향상하고(Ayers and Kaplan 2003; Tucker and Matsumura 1997), 감사위험이 높은 감사업체에서 감사절차상 문제점을 더 많이 발견하며(Asare et al. 2005) 감사테스트 수준을 더 높인다고 선행연구되었다(Matsumura and Tucker 1995). 국내연구에서도 내부심리시간(품질관리검토부서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류승우 등(2015)의 연구는 특정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석우와 정광화(2015)의 연구도 회계법인의 내부심리시간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감사보고 시차를 내부심리활동의 대응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은 대부분 국가에서 감사시간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검토시간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도 외감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기업들은 2014 회계연도부터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포함한 직급 및 직무별 감사시간 내역과 주요 감사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연구에서 획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감사실시내용’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최근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배길수 등

(2015)는 ‘외부감사실시내용’상 보고되는 2014년도의 상장기업 품질관리 검토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전기 및 당기재량발생액 절댓값이 높을수록 총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영환과 장금주(2016)의 연구는 2014년과 2015년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들의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실시내용’상 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을 분석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사업위험수준과 상장 여부에 따른 감사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품질관리검토부서의 투입시간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피감사회사의 부채비율로 측정된 재무적 위험이 높을수록, 초도감사인 경우 그리고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품질관리검토투입시간이 높았다. 김용수와 전규안(2016)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품질에 미치는 감사시간의 영향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 감사시간 가운데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의 감사시간 그리고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만이 유의적으로 재량 발생액을 감소시켜서 감사품질을 제고시켰다. 안혜림과 최국현(2017)은 전체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검토시간 비중이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실제이익조정의 세 가지 측정치인 비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 비정상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 각각 품질관리검토시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비정상적인 영업현금흐름과 비정상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적 비용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기재량발생액, 실제이익조정액이 클수록 총감사시간에서 품질관리검토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의 감사시간이 유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켜서 감사품질을 제고시켰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추론에 따라 총감사시간에서 품질관리검토자투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여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사인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행태는 이익조정에 좀 더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영자에게 감사인 교체의 이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사인 교체 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감사인은 1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기말감사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데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에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또한, 감사와 분·반기검토 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폐지¹⁵⁾되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상장회사는 관리종목¹⁶⁾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감사와 분·반기검토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위험과 책임이 상이하다. 감사와 분·반기검토 기간을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반기검토기간보다 감사기간 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합산한 총시간에 대한 기본가설과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구분한 세부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5)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16)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가설 1〉 :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감사와 분·반기 구분에 따른 비교]

〈가설 1-1〉 :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가설 1-2〉 :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4.1.2 감사보수의 조절효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여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간의 협상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고 해당 보수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은 감사보수의 금액 크기만으로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 때문에 투자자와 규제기관은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피감사회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회계정보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연구에서도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명인 등(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피감사회사의 보수주의 수준이 감소한다고 보고함으로써, 피감사회사에게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지급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광욱 등

(2008) 연구에 의하면 정상감사보수를 초과하여 피감사회사가 지급하는 비정상감사보수는 비정상지대(idiosyncratic rent)로 피감사회사와의 높아진 경제적 유대관계의 영향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감사품질이 낮은 재무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확열·박미영(2010) 연구결과, 비정상감사보수와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우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나 피감사회사 이사회 독립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최근 연구로서 김명인 등(2013)은 Khan and Watts(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보수주의 대응치를 측정하고 연구대상기간을 12년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관련 연구보다 길게 설정하였는데 감사인에게 지불하는 비정상 감사보수가 늘어날수록 피감사회사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추론에 따라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감사인의 감사투입노력인 감사시간의 양적·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사보수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감사인은 1개 사업연도기간 동안 기말감사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데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해야하는 반면에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또한, 감사와 분·반기검토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 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되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상장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감사와 분·반기검토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

회사의 위험과 책임이 상이하다. 감사와 분·반기검토 기간을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반기검토 기간보다 감사 기간동안 투입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합산한 총시간에 대한 기본가설과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구분한 세부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II〉 :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감사와 분·반기 구분에 따른 비교]

〈가설 II-1〉 :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II-2〉 : 감사보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3 경영자 교체의 조절효과

기업은 가치극대화를 위해 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교체된 신입경영자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통한 경영능력의 탁월성 입증, 재임기간 동안의 보수수준 증대와 같은 사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Big Bath를 수행할 동기를 가진다(이아영 등 2007). 선행연구에서는 신입경영자가 교체연도에

차기의 반전된 경영성과, 이익의 점진적 증가추세 및 자신의 미래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Peter Wells 2002; 이아영 등 2007). 경영자는 보너스 산출이나 성과계약 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평가받게 되므로 자신의 사적이익 추구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익조정을 행할 유인을 갖는다. 특히 재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계약 시점에 있는 경영자는 이익조정에 대한 위험 부담을 거의 지지 않게 되므로 개인의 효익을 위해 이익을 높이는 재량적 회계선택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고윤성과 기은선 2014). 반면 신임경영자는 전임경영자가 처리하지 않은 손실을 인식하는 Big Bath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 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전임경영자에게 전가시켜 이후 자신의 성과를 높이하고자 한다(이아영 등 2007). 또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과거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재임 기간에 대한 성과평가에 영향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재임 기간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적 추론에 따라, 신임경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수준을 보고하는데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갖게 된다. 실제로 경영자교체와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현상 발생하였으며(노준화와 왕현선 2005) 경영자 교체 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 것(김중길과 최애화 2011)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용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감사인은 1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기말감사와 분·반기검토를 수행하는데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에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따라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또한, 감사와 분·반기검토

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되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상장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감사와 분·반기검토에 대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위험과 책임이 상이하다. 감사와 분·반기검토 기간을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반기검토 기간보다 감사 기간동안 투입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합산한 총시간에 대한 기본가설과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구분한 세부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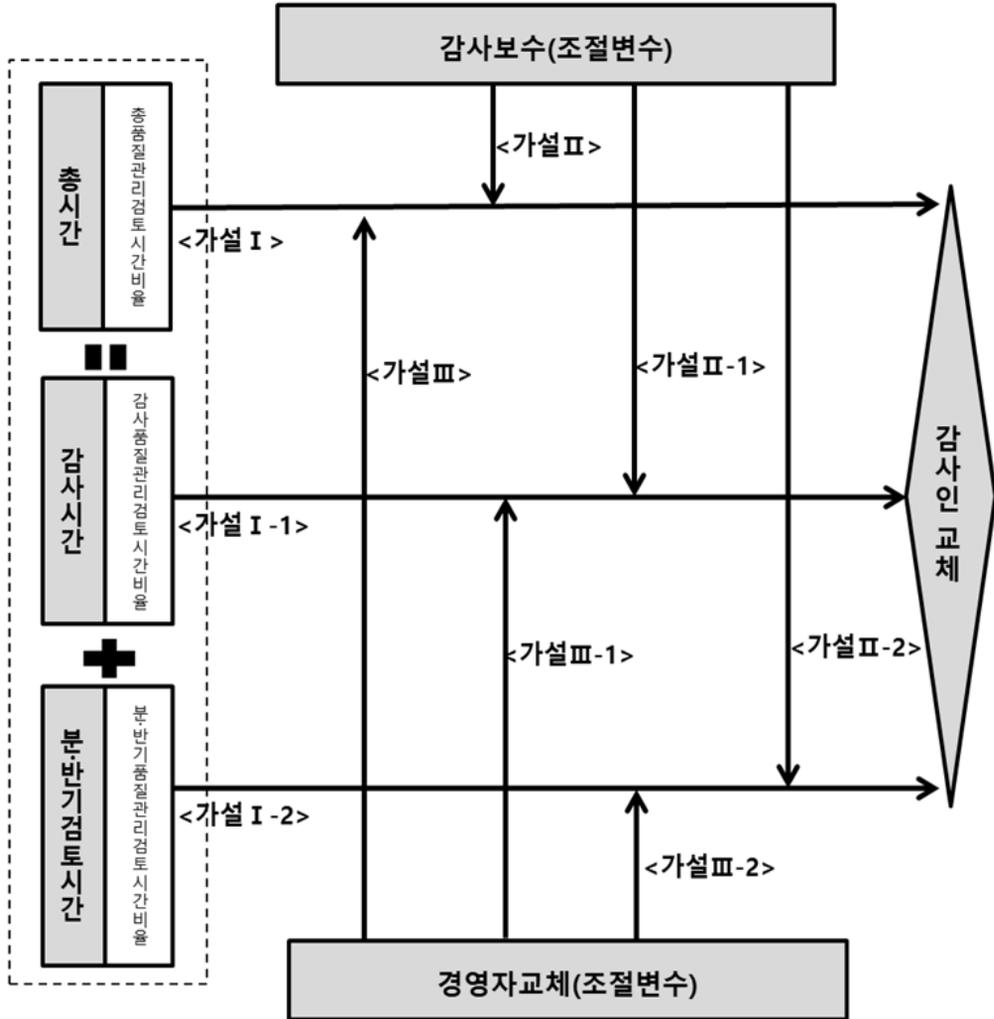
〈가설 Ⅲ〉 : 경영자 교체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¹의 영향을 미친다.

[감사와 분·반기 구분에 따른 비교]

〈가설 Ⅲ-1〉 : 경영자 교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¹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Ⅲ-2〉 : 경영자 교체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2〉 연구가설의 체계도



4.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표본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연구에 중요한 관심변수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인 ‘외부감사실시내용’에 대한 입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수기로 직접 취합해야만 했던 점, 정부감독당국의 감독과 회계법인 내부의 품질관리절차가 비상장회사보다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종 연구대상표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총 4,580개의 기업-연도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 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 ② 금융업 제외
- ③ 비적정의견 제외
- ④ 재무자료 등 누락된 기업 제외

〈표 15〉 연구 표본샘플

항목	기업 수(개)
1. 전체샘플(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5,744
2. 금융업 제외	593
3. 비적정의견 제외	19
4. 재무자료 등 결측치	170
5. 외감실시내용 결측치(주 1)	321
6. 감사보수내역 결측치	61
7. 유효샘플(1-2-3-4-5-6)	4,580

(주1) 분·반기 ‘외부감사실시내용’이 없는 샘플을 제외함

표본에 해당하는 기업-연도 관측 자료들의 경영자(대표이사), 감사 의견 및 기업재무 데이터는 FnGuide의 금융시장데이터시스템과 전자공시 시스템상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보수는 각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상 감사보수를 수기로 직접 취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자료를 포함한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각 변수의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 99%를 초과하는 값에 대해 윈저라이제이션(winsorization)을 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다.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가설 I>,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감사보수의 조절 효과<가설 II>,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가설 III>를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인 교체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인 노준화와 왕현선(2005), 김중길과 최애화(2011)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기본가설인 <가설 I> <가설 II> 및 <가설 III> 그리고 감사와 분·반기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세부가설(I-1, I-2, II-1, II-2 및 III-1, III-2)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9개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가 아닌 0, 1로 표시되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로 정규분포가 아닌 이항분포를 따르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t기의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t-1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t기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t-1기의 시차(time-lag) 자료를 사용하였다.

4.3.1 <가설 I>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이다. 관심변수인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이 높다는 의미는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총투입시간 가운데 품질관리검토부서(심리실 등)투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품질관리검토부서에서는 개별 감사팀이 감사위험에 상응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승우 등 2015). 총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을 억제하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하여 감사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사인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감사행태는 이익조정에 좀 더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영자에게 감사인 교체 이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심변수(QC_Total_{t-I})의 회귀계수(a₁)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text{----식(I)}$$

여기서,

AC_t: t기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1, 아니면 0

QC_Total_{t-I}: t-1기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LnSIZE_{t-I}: t-1기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n(총자산)]

LEV_{t-I}: t-1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100, %)

ROA_{t-I}: t-1기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

CFO_{t-I}: t-1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100, %)

GRW_{t-I}: t-1기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증가액/전기매출액*100, %)

BIG_{t-I}: t-1기 감사인이 BIG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경우 1, 아니면 0

IND_{t-I}: 산업터미변수(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구분)

YEAR_{t-I}: 연도터미변수(각 연도별 구분)

e_t : 잔차항

본 연구에서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frac{\text{품질관리검토자 총투입시간}}{\text{총투입시간}}$$

여기서,

품질관리검토자총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분·반기검토와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 투입시간의 총합계

총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분·반기검토 및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개별감사팀 투입시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의 총합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분·반기검토 및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전문가 및 수주산업전문가 투입시간 총합계

본 연구의 식(1)에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이용된 변수들로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로는 기업규모($\text{LnSIZE}_{i,t}$), 부채비율($\text{LEV}_{i,t}$), 총자산순이익율($\text{ROA}_{i,t}$), 총자산영업현금흐름($\text{CFO}_{i,t}$), 매출액성장률($\text{GRW}_{i,t}$), BIG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여부($\text{BIG}_{i,t}$), 산업별 차이에 대한 통제변수인 산업더미변수($\text{IND}_{i,t}$), 연도별 차이에 대한 통제변수인 기간더미변수($\text{YEAR}_{i,t}$)이다. 기업규모($\text{LnSIZE}_{i,t}$)는 의견구매 및 대리인비용과 관련된 생략된 변수에 대한 대용변수가 될 수 있으며(박홍조와 정태범 2008) 기업 규모가 클수록 협상력과 재무적 곤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커서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McKeown et al. 1991) 감사인이 감당하는 소송위험이 커서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Reynolds and Francis 2001)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기업 규모($\text{LnSIZE}_{i,t}$) 변수는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관측치 간의 편차를 줄여 정규성을 높였다.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은 감사인 교체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chwartz and Menon 1985; Dhaliwal et al. 1993)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Ge and MeVay 2005; Doyle et al. 2007) 부채비율(LEV), 총자산순이익율(ROA), 총자산 영업현금흐름(CFO), 매출액성장률(GRW) 변수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은 기업 규모와 대외적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시 BIG4회계법인 여부는 감사인 교체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Davidson III et al. 2005). 표본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각 산업더미변수(IND), 기간 더미변수(YEAR)을 연구모형에 반영하였다.

4.3.2 <가설 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감사 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가설 I-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 변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it})이다. 감사인은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분·반기검토와 기말감사를 수행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는 반면에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기말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또한, 감사와 분·반기검토 기간을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

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변수(QC_Audit_{i,t-1})의 회귀계수(a₁)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text{----식(I-1)}$$

여기서,

QC_Audit_{i,t-1}: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을 참조.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frac{\text{품질관리검토자 감사투입시간}}{\text{총감사투입시간}}$$

여기서,

품질관리검토자 감사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 투입시간의 총합계

총감사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개별감사팀 투입시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의 총합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전문가 및 수주산업전문가 투입시간 총합계

4.3.3 <가설 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분·반기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가설 I-2>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분·반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이다. 감사인은 전체 사업연도 기간 분·반기검토와 기말감사를 수행한다.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는 반면에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기말감사결과가 상장폐지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검토 의견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견과 비교할 때 검토의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낮다. 감사와 분·반기검토기간을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분·반기 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심변수(QC_Review_{t,I})의 회귀계수(a_I)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C_{i,t} = a_0 + a_1QC_Review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text{----식(I-2)}$$

여기서,

QC_Review_{t,I}: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을 참조.

본 연구에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frac{\text{품질관리검토자 분·반기투입시간}}{\text{총분·반기투입시간}}$$

여기서,
 품질관리검토자 분·반기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 투입시간의 총합계
 총분·반기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중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개별감사팀
 투입시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의 총합계
 *기타전문가투입시간: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전문가 및 수주산업전문가 투입시간 총합계

4.3.4 <가설 II>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 II>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I)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LnFEE_{t,i})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LnFEE_{t,i})를 통해 감사보수(LnFEE_{t,i})가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여 피감사회사와 감사인 간의 협상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고 해당 보수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에

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은 감사보수의 금액 크기만으로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피감사회사의 보수주의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인 등 2008; 오광욱 등 2008; 김확열과 박미영 2010; 김명인 등 2013).

따라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보수가 증가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1}*LnFEE_{t-1})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LnFEE_{i,t-1} + a_3QC_Total_{i,t-1}*Ln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

여기서,

LnFEE_{t-1}: t-1기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감사보수)]

QC_Total_{t-1}*LnFEE_{t-1}: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을 참조.

4.3.5 <가설 I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감사보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II-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I

-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 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QC_Audit_{t-I}*LnFEE_{t-I})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I}*LnFEE_{t-I})를 통해 감사보수(LnFEE_{t-I})가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감사인은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분·반기검토와 기말감사를 수행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는 반면에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기말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I}*LnFEE_{t-I})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begin{aligned}
 AC_{i,t} = & a_0 + a_1QC_Audit_{i,t-1} + a_2LnFEE_{i,t-1} + a_3QC_Audit_{i,t-1}*LnFEE_{i,t-1} + a_4LnSIZE_{i,t-1} \\
 &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1)}
 \end{aligned}$$

여기서,

QC_Audit_{t-I}*LnFEE_{t-I}: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1, II)을 참조.

4.3.6 <가설 I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분·반기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감사보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보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설 II-2>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I-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1*}*LnFEE_{*t-1*})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를 통해 감사보수가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와 비교하여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또한, 감사결과가 피감사회사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검토의견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견과 비교할 때 검토의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낮다. 따라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1*}*LnFEE_{*t-1*})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값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AC_{i,t} = a_0 + a_1QC_Review_{i,t-1} + a_2LnFEE_{i,t-1} + a_3QC_Review_{i,t-1}*Ln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2)}$$

여기서,

QC_Review_{*t-1*}*LnFEE_{*t-1*}: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2, II)을 참조.

4.3.7 <가설 Ⅲ>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경영자 교체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 Ⅲ>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Ⅲ)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경영자 교체의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CEO_{t-I})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CEO_{t-I})를 통해 경영자 교체¹⁷⁾(CEO_{t-I})가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신임경영자가 교체연도 이후의 반전된 경영성과와 점진적 이익의 증가추세 그리고 자신의 향후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축소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Pourciau 1993; Peter Wells 2002; 이강일과 천종률 1999; 이아영 등 2007). 경영자는 보너스 산출이나 성과계약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평가받게 되므로 자신의 사적이익 추구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익조정을 행할 유인을 갖는다(이아영 등 2007). 따라서 신임경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수준을 보고하는데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경영자 교체와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현상 발생하였으며(노준화와 왕현선 2005) 경영자 교체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김중길과 최애화 2011)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CEO_{t-I})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17) 감사보고서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인 경우, 1인 이상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CEO_{i,t-1} + a_3QC_Total_{i,t-1}*CEO_{i,t-1} + a_4LnSIZE_{i,t-1} \\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I)}$$

여기서,

CEO_{t-1}: t-1기 경영자(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1, 아니면 0

QC_Total_{t-1}*CEO_{t-1}: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을 참조.

4.3.8 <가설 III-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경영자 교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영자 교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 III-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II-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경영자교체의 상호작용변수(QC_Audit_{t-1}*CEO_{t-1})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1}*CEO_{t-1})를 통해 경영자 교체(CEO_{t-1})가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감사인은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분·반기검토와 기말감사를 수행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는 반면에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기말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경영자 교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1}*CEO_{t-1})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CEO_{i,t-1} + a_3QC_Audit_{i,t-1}*CEO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I-1)}$$

여기서,

QC_Audit_{t-1}*CEO_{t-1}: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1, III)을 참조.

4.3.9 <가설 III-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총투입시간 중 분·반기 기간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영자 교체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설III-2>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식(III-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경영자 교체의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1}*CEO_{t-1})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1}*CEO_{t-1})를 통해 경영자 교체(CEO_{t-1})가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와 비교하여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또한, 감사결과가 피감사회사의 상장폐지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검토의견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견과 비교할 때 검토의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낮다. 따라서 경영자 교체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조절효과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1} * CEO_{t-1})의 회귀계수(a₃)는 유의한 값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AC_{i,t} = & a_0 + a_1QC_Review_{i,t-1} + a_2CEO_{i,t-1} + a_3QC_Review_{i,t-1}*CEO_{i,t-1} + a_4LnSIZE_{i,t-1} \\
 &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II-2)}
 \end{aligned}$$

여기서,

QC_Review_{t-1}*CEO_{t-1}: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2, III)을 참조.

V. 실증분석

5.1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표 16〉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유효 표본 전체(N=4,580)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감사인 교체비율(AC_t) 평균은 18%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인 교체비율 15%(김재춘 20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관심변수인 QC_Total_{t-1} , QC_Audit_{t-1} , QC_Review_{t-1} 의 평균값은 각각 0.0186, 0.0183, 0.0209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1})이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1})보다 소폭 높았으며, 표준편차는 각각 0.0115, 0.0116, 0.0169를 보였고 최솟값은 각각 0.0041, 0.0031, 0.0000 그리고 최댓값은 각각 0.0677, 0.0662, 0.0909를 보였다.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1})의 최솟값이 0을 나타낸 것은 분·반기검토 총투입시간 중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 투입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보수($\ln FEE_{t-1}$) 평균값은 4.3658을 보였으며 표준편차는 0.6984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0.6931 그리고 최댓값은 6.7068 값을 보였다. 감사보수($\ln FEE_{t-1}$)는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관측치간의 편차를 줄여 정규성을 높였다. 감사인 교체(AC_t), 4대(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여부(BIG_{t-1}), 경영자 교체(CEO_{t-1})변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최댓값이 1, 최솟값이 0을 갖는다. 경영자 교체(CEO_{t-1})여부는 평균 0.3090, 표준편차 0.4623로 상장회사 경영자의 교체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재무건전성 변수 중 총자산($\ln SIZE_{t-1}$)은 관측치간의 편차를 줄여 정규성을 높이기 위해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그 결과 총자산 평균은 19.0912, 표준편차 1.4716을 보였다. 부채비율(LEV_{t-1})은 평균 42.22%, 표준편차 20.74%를 보였으며 최솟값은 5.41%, 최댓값은 93.53%로 나타

났다. 총자산수익률(ROA_{t-1})은 평균 1.07%였으며, 표준편차는 9.96%, 최솟값은 -47.25%, 최댓값은 24.20%였다. 총자산영업현금흐름비율(CFO_{t-1})은 평균 4.67%, 표준편차 8.75%, 최솟값 -27.50%, 최댓값 29.33%를 보였으며 매출액성장률(GRW_{t-1})은 평균 7.93%, 표준편차 34.74%, 최솟값 -57.21%, 최댓값 215.02%를 보였다. 더미변수로 표시한 BIG4회계법인(BIG_{t-1})은 평균 0.5000, 표준편차 0.5000를 보였다.

<표 16>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변수 \ 구분	N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솟값	25%	75%	최댓값
AC_t	4,580	0.1800	0.0000	0.3880	0.0000	0.0000	0.0000	1.0000
QC_Total_{t-1}	4,580	0.0186	0.0151	0.0115	0.0041	0.0109	0.0231	0.0677
QC_Audit_{t-1}	4,580	0.0183	0.0153	0.0116	0.0031	0.0104	0.0225	0.0662
QC_Review_{t-1}	4,580	0.0209	0.0164	0.0169	0.0000	0.0095	0.0269	0.0909
$LnFEE_{t-1}$	4,580	4.3658	4.2484	0.6984	0.6931	3.9120	4.6051	6.7068
CEO_{t-1}	4,580	0.3090	0.0000	0.4623	0.0000	0.0000	1.0000	1.0000
$LnSIZE_{t-1}$	4,580	19.0912	18.8013	1.4716	15.5280	18.1183	19.7539	26.2922
LEV_{t-1}	4,580	42.2255	42.1119	20.7450	5.4108	25.1761	57.8692	93.5377
ROA_{t-1}	4,580	1.0733	2.5181	9.9638	-47.2582	-0.8235	5.9912	24.2002
CFO_{t-1}	4,580	4.6706	5.0625	8.7567	-27.5030	0.2016	9.6095	29.3334
GRW_{t-1}	4,580	7.9376	2.9489	34.7414	-57.2178	-6.8407	14.0572	215.0209
BIG_{t-1}	4,580	0.5000	1.0000	0.5000	0.0000	0.0000	1.0000	1.0000

여기서,

AC_t : t기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1, 아니면 0

QC_Total_{t-I} : t-1기 총 투입시간(분·반기검토+감사)으로 산정한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QC_Audit_{t-I} : t-1기 감사투입시간으로 산정한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QC_Review_{t-I} : t-1기 분·반기투입시간으로 산정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LnFEE_{t-I}$: t-1기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감사보수)]

CEO_{t-I} : t-1기 경영자(대표이사)가 교체된 경우 1, 아니면 0

$LnSIZE_{t-I}$: t-1기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n(총자산)]

LEV_{t-I} : t-1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100)

ROA_{t-I} : t-1기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CFO_{t-I} : t-1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총자산*100)

GRW_{t-I} : t-1기 매출액성장률(당기매출액증가액/전기매출액*100)

BIG_{t-I} : t-1기 감사인이 BIG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인 경우 1, 아니면 0

〈표 17〉은 유효표본 전체(N=4,580)를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인 교체(AC_t) 표본의 빈도수와 구성비, 감사인 교체 표본 중 BIG4회계법인과 Non-BIG4회계법인의 감사인 교체 전·후 방향에 따른 표본의 빈도수와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유효표본 전체(N=4,580)중 감사인 교체 표본은 844개로 전체표본의 18.5%로 나타났으며 감사인 교체 표본 중, 감사인을 Non-BIG4회계법인에서 BIG4회계법인으로 변경한 상향교체 표본은 99개로 전체교체표본(N=844)의 11.7%, 감사인을 BIG4 회계법인에서 BIG4회계법인으로, Non-BIG4회계법인에서 Non-BIG4회계법인으로변경한 수평교체 표본은 537개로 전체교체표본(N=844)의 63.6%, 감사인을 BIG4회계법인에서 Non-BIG4회계법인으로 변경한 하향교체 표본은 208개로 전체교체표본(N=844)의 24.7%를 나타냈다. 수평교체와 하향교체와 비교하여 상향교체가 일어나는 빈도수는 매우 낮았다.

<표 17> 연구표본 구성내역

구 분	빈도(개)	구성비(%)
비교체	3,736	81.5
교 체	844	18.5
상향교체	99	2.1(11.7)
수평교체	537	11.7(63.6)
하향교체	208	4.7(24.7)
계	4,580	100.0

<표 18>는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 비교체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효표본 전체(N=4,580)를 대상으로 감사인 교체 차이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QC_Total_{t-1} 와 QC_Review_{t-1} 의 경우 교체 집단과 비교체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QC_Audit_{t-1} 의 경우 교체집단과 비교체집단 사이의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감사인 교체집단이 감사인 비교체 집단보다 평균값이 0.00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교체 시에 감사인 비교체시보다 총투입시간 중 품질관리검토투입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분·반기보다 감사 시점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감사보수($\ln FEE_{t-1}$) 변수는 1% 수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감사인 교체 집단이 감사인 비교체 집단보다 평균값이 0.06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교체가 더 빈번히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경영자 교체(CEO_{t-1}) 변수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의 규모($\ln SIZE_{t-1}$) 변수는 1%유의수준에서 비교체집단이 교체 집단보다 평균값이 0.2428 높게 나타났다. 재무건전성 변수(LEV_{t-1} , ROA_{t-1} , CFO_{t-1})는 모두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감사인 교체집단에서 비교체 집단보다 열위하게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성 변수인 매출액증가율(GRW_{t-1}) 역시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감사인 교체집단이 비교체 집단보다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BIG4회계법인(BIG_{t-1})

변수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사인 교체집단이 비교체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8> 차이분석(T-test)

변수	교체여부(N=4,580)		
	교체 (N=844)	비교체 (N=3,736)	t value
QC_Total _{t-1}	0.0191	0.0185	1.555
QC_Audit _{t-1}	0.0194	0.0181	2.754***
QC_Review _{t-1}	0.0204	0.0210	-1.032
LnFEE _{t-1}	4.4159	4.3545	2.309***
CEO _{t-1}	0.3070	0.3100	-0.175
LnSIZE _{t-1}	18.8931	19.1359	-4.338***
LEV _{t-1}	47.0775	41.1294	6.855***
ROA _{t-1}	-1.2091	1.5889	-5.843***
CFO _{t-1}	3.7722	4.8736	-2.949*
GRW _{t-1}	12.1068	6.9957	3.277***
BIG _{t-1}	0.5500	0.4900	3.416***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증)

주요 변수간의 Pearson 상관관계가 <표 19>에 요약되어 있다. <표 19>의 두 번째 열은 종속변수인 당기 감사인 교체와 각 관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당기 감사인 교체(AC_t)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1})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1})변수 및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1})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분·반기 검토와 기말감사를 수행한다.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는 반면에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기말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1})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감사시간과 분·반기투입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1})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보수(LnFEE_{t-1})는 감사인 교체(AC_t)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 유인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 교체(AC_t)와 경영자 교체(CEO_{t-1})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감사인 교체에 대한 경영자(대표이사)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비율(LEV_{t-1}), 매출액증가율(GRW_{t-1}), BIG4회계법인여부(BIG_{t-1})와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총자산(LnSIZE_{t-1}), 총자산이익률(ROA_{t-1})은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예상부호와 일치하였으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1})은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사인을 교체 경향이 재무건정성이 약화된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부채비율이 높고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영업현금흐름이 낮으며 기업 규모가 큰 경우 감사인 교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Krishnan and Stephens 1996)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19>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N=4,580 전체표본)

변수	AC _t	QC_Total _{t-1}	QC_Audit _{t-1}	QC_Review _{t-1}	LnFEE _{t-1}	CEO _{t-1}	LnSIZE _{t-1}	LEV _{t-1}	ROA _{t-1}	CFO _{t-1}	GRW _{t-1}	BIG _{t-1}
AC _t	1											
QC_Total _{t-1}	0.023 (0.120)	1										
QC_Audit _{t-1}	0.043*** (0.004)	0.901*** (0.000)	1									
QC_Review _{t-1}	-0.015 (0.302)	0.808*** (0.000)	0.529*** (0.000)	1								
LnFEE _{t-1}	0.034** (0.021)	-0.350*** (0.000)	-0.275*** (0.000)	-0.353*** (0.000)	1							
CEO _{t-1}	-0.003 (0.861)	-0.059*** (0.000)	-0.044*** (0.003)	-0.060*** (0.000)	0.135*** (0.000)	1						
LnSIZE _{t-1}	-0.064*** (0.000)	-0.329*** (0.000)	-0.259*** (0.000)	-0.325*** (0.000)	0.778*** (0.000)	0.150*** (0.000)	1					
LEV _{t-1}	0.111*** (0.000)	-0.093*** (0.000)	-0.071*** (0.000)	-0.109*** (0.000)	0.316*** (0.000)	0.061*** (0.000)	0.303*** (0.000)	1				
ROA _{t-1}	-0.109*** (0.000)	-0.023 (0.119)	-0.024 (0.108)	-0.018 (0.233)	-0.002 (0.907)	-0.095*** (0.000)	0.178*** (0.000)	-0.290*** (0.000)	1			
CFO _{t-1}	-0.049*** (0.001)	-0.075*** (0.000)	-0.070*** (0.000)	-0.061*** (0.000)	0.075*** (0.000)	-0.093*** (0.000)	0.168*** (0.000)	-0.154*** (0.000)	0.551*** (0.000)	1		
GRW _{t-1}	0.057*** (0.000)	0.063*** (0.000)	0.056*** (0.000)	0.054*** (0.000)	-0.043*** (0.004)	-0.032** (0.029)	-0.028** (0.046)	0.009 (0.564)	0.182*** (0.000)	0.070*** (0.000)	1	
BIG _{t-1}	0.050*** (0.001)	-0.358*** (0.000)	-0.252*** (0.000)	-0.392*** (0.000)	0.441*** (0.000)	0.078*** (0.000)	0.371*** (0.000)	0.078*** (0.000)	0.064*** (0.000)	0.088*** (0.000)	-0.034** (0.023)	1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내는 유의확률

5.2 <가설 I>의 검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

식(I)은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
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0>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t})과 종속변수 감사인 교체(AC_t)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
(QC_Total_{t,t})의 계수는 8.925로 5%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인 교체
(AC_t)와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여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
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은 감사기간과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총투입시간(개별감사팀 투입시간+전문가 투입시간+품질관리검토
자 투입시간)가운데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을 더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교체 여부에 재량 발생액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권혜진과 김명인(2010)의 선행연구와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는 신근식 등(2014)의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관심변수의 P-Value 값이 0.016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관심변수인 총품질관리검토시
간비율이 감사기간과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되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과 분·반기검토투입시간의 서로 다른 영향에 기인
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식(I-1)과 식(I-2)의
회귀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전기 총자산(LnSIZE_{t,t}), 전기 총
자산순이익률(ROA_{t,t}), BIG4회계법인(BIG_{t,t})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
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t}), 전기 매출액성
장율(GRW_{t,t})은 1% 유의수준에서 양(+)
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
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t})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

(+)의 계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현금 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293.2(df67)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6에서 최대 1.76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0> 식(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5.769	0.000	0.999
<i>QC_Total_{i,t-1}</i>	+	8.925**	5.750	0.016
<i>LnSIZE_{i,t-1}</i>	-	-0.228***	36.003	0.000
<i>LEV_{i,t-1}</i>	+	0.017***	54.665	0.000
<i>ROA_{i,t-1}</i>	-	-0.018***	14.419	0.000
<i>CFO_{i,t-1}</i>	-	0.009	2.679	0.102
<i>GRW_{i,t-1}</i>	+	0.004***	12.739	0.000
<i>BIG_{i,t-1}</i>	-	-0.601***	43.790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93.2(df 67)***		
Nagelkerke R ²		0.101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IND_{i,t-1}: 산업 더미변수(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구분)
YEAR_{i,t-1}: 연도 더미변수(각 연도별 구분)
 et : 잔차항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2.1 <가설 I-1>의 검증

식(I-1)은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가설 I-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1>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i})과 종속변수 감사인 교체(AC_i)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Audit_{t,i})의 계수는 12.150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인 교체(AC_i)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은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총투입시간(개별감사팀 투입시간+전문가투입시간+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가운데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을 더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I>의 검증결과와 같이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지만, 예상과 같이 P-Value 값이 0.000으로 유의성은 <가설 I>의 검증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보다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분·반기검토와 비교하여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고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검토보다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전기 총자산($\text{LnSIZE}_{t,i}$), 전기총자산순이익률($\text{ROA}_{t,i}$), BIG4회계법인($\text{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text{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text{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text{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299.6(df67)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0.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5에서 최대 1.68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1> 식(I-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2.254	0.000	0.999
<i>QC_Audit_{i,t-1}</i>	+	12.150***	12.390	0.000
<i>LnSIZE_{i,t-1}</i>	-	-0.226***	35.813	0.000
<i>LEV_{i,t-1}</i>	+	0.017***	54.711	0.000
<i>ROA_{i,t-1}</i>	-	-0.018***	14.665	0.000
<i>CFO_{i,t-1}</i>	-	0.009*	2.808	0.094
<i>GRW_{i,t-1}</i>	+	0.004***	12.471	0.000
<i>BIG_{i,t-1}</i>	-	-0.598***	45.396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99.6(df 67)***		
Nagelkerke R ²		0.103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2.2 <가설 I-2>의 검증

식(I-2)은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가설 I-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2>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과 종속변수 감사인 교체(AC_t)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Review_{t,i})의 계수는 -1.004로 음(-)의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은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총투입시간(개별감사팀 투입시간+전문가 투입시간+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 가운데 품질관리검토자 투입시간을 유의하게 변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성향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는 반면에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한다. 기말감사결과가 상장폐지에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검토의견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을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감사의견과 비교할 때 검토의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이는 분·반기검토기간동안 투입된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전기 총자산(LnSIZE_{t,i}), 전기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287.2(df67)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9.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5에서 최대 1.765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2> 식(1-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Review_{i,t-1} + a_2LnSIZE_{i,t-1} + a_3LEV_{i,t-1} + a_4ROA_{i,t-1} + a_5CFO_{i,t-1} + a_6GRW_{i,t-1} + a_7BIG_{i,t-1} + a_8IND_{i,t-1} + a_9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4.264	0.000	0.999
<i>QC_Review_{i,t-1}</i>	+, -	-1.004	0.140	0.708
<i>LnSIZE_{i,t-1}</i>	-	-0.247***	42.179	0.000
<i>LEV_{i,t-1}</i>	+	0.017***	54.429	0.000
<i>ROA_{i,t-1}</i>	-	-0.017***	13.206	0.000
<i>CFO_{i,t-1}</i>	-	0.008	2.331	0.126
<i>GRW_{i,t-1}</i>	+	0.004***	13.797	0.000
<i>BIG_{i,t-1}</i>	-	-0.529***	33.476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87.2(df 67)***		
Nagelkerke R ²		0.099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 <가설 II>의 검증(감사보수의 조절효과)

식(II)는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II>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3>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 * LnFEE_{t,i}$)를 통해 감사보수($LnFEE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Total_{t,i} * LnFEE_{t,i}$)의 계수는 -5.943로 예상과 같이 음(-)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 * LnFEE_{t,i}$)의 계수가 예상과 같이 음(-)의 값을 가져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통계적 유의하지 않아 일반화할 수 없었다. 다만, <가설 I-1>과 <가설 I-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와 분·반기검토에 대하여 감사위험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어 <가설 II-1>과 <가설 II-2>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감사보수($LnFEE_{t,i}$)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은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P-Value 값이 0.15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가설 I-1>과 <가설 I-2>의 검증결과와 같이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의 계수 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에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의 계수 값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아, 이 둘의 희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 총자산($LnSIZE_{t,i}$),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 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328.5(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1.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¹⁸⁾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071에서 최대 3.637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8) 조절변수에 대하여 Mean-Centering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표 23> 식(I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LnFEE_{i,t-1} + a_3QC_Total_{i,t-1} * Ln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26.710	0.000	0.999
<i>QC_Total_{i,t-1}</i>	+	35.146	2.034	0.154
<i>LnFEE_{i,t-1}</i>	+	0.693***	23.101	0.000
<i>QC_Total_{i,t-1}*LnFEE_{i,t-1}</i>	-	-5.943	0.974	0.324
<i>LnSIZE_{i,t-1}</i>	-	-0.439***	70.263	0.000
<i>LEV_{i,t-1}</i>	+	0.015***	44.279	0.000
<i>ROA_{i,t-1}</i>	-	-0.013***	7.779	0.005
<i>CFO_{i,t-1}</i>	-	0.009	2.476	0.116
<i>GRW_{i,t-1}</i>	+	0.004***	14.231	0.000
<i>BIG_{i,t-1}</i>	-	-0.478***	25.986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328.5(df 69)***		
Nagelkerke R ²		0.112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Total_{t-1}*LnFEE_{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1 <가설 II-1>의 검증

식(II-1)은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 II-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4>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i}*LnFEE_{t,i})를 통해 감사보수(LnFEE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i})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Audit_{t,i}*LnFEE_{t,i})의 계수는 -9.757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감사인 교체직전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위험이 높을 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증가하면 시간당 보수가 하락하기 때문에(배길수 등 2015), 감사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가설 I-1>에서와 같이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i})은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감사보수(LnFEE_{t,i})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총자산(LnSIZE_{t,i}),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 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337.4(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1.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¹⁹⁾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070에서 최대 3.558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9) 조절변수에 대하여 Mean-Centering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표 24> 식(II-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LnFEE_{i,t-1} + a_3QC_Audit_{i,t-1} * Ln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23.429	0.000	0.999
<i>QC_Audit_{i,t-1}</i>	+	54.211**	5.027	0.025
<i>LnFEE_{i,t-1}</i>	+	0.766***	28.725	0.000
<i>QC_Audit_{i,t-1}*LnFEE_{i,t-1}</i>	-	-9.757*	2.820	0.093
<i>LnSIZE_{i,t-1}</i>	-	-0.443***	72.896	0.000
<i>LEV_{i,t-1}</i>	+	0.015***	43.886	0.000
<i>ROA_{i,t-1}</i>	-	-0.014***	7.857	0.005
<i>CFO_{i,t-1}</i>	-	0.009	2.525	0.109
<i>GRW_{i,t-1}</i>	+	0.004***	14.027	0.000
<i>BIG_{i,t-1}</i>	-	-0.472***	26.384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337.4(df 69)***		
Nagelkerke R ²		0.115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Audit_{t-1}*LnFEE_{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3.2 <가설 II-2>의 검증

식(II-2)는 “감사보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II-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5>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i} * LnFEE_{t,i}$)를 통해 감사보수($LnFEE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Review_{t,i} * LnFEE_{t,i}$)의 계수는 -6.023로 음(-)의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감사보수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i} * LnFEE_{t,i}$)의 계수가 음(-)의 값을 가져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통계적 유의하지 않아 일반화할 수 없었다. 다만, <가설 I-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에 대하여 감사보다 감사인의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은 <가설 I-2>의 검증결과와 달리 양(+)의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사보수($LnFEE_{t,i}$)는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총자산($LnSIZE_{t,i}$),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320.8(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1.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²⁰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070에서 최대 3.641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 조절변수에 대하여 Mean-Centering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표 25> 식(II-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Review_{i,t-1} + a_2LnFEE_{i,t-1} + a_3QC_Review_{i,t-1}*Ln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25.061	0.000	0.999
<i>QC_Review_{i,t-1}</i>	+, -	24.742	2.654	0.103
<i>LnFEE_{i,t-1}</i>	+	0.687***	29.572	0.000
<i>QC_Review_{i,t-1}*LnFEE_{i,t-1}</i>	+, -	-6.023	2.619	0.106
<i>LnSIZE_{i,t-1}</i>	-	-0.456***	75.747	0.000
<i>LEV_{i,t-1}</i>	+	0.015***	44.233	0.000
<i>ROA_{i,t-1}</i>	-	-0.013***	7.240	0.007
<i>CFO_{i,t-1}</i>	-	0.008	2.195	0.138
<i>GRW_{i,t-1}</i>	+	0.004***	14.768	0.000
<i>BIG_{i,t-1}</i>	-	-0.402***	18.048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320.8(df 69)***	
Nagelkerke R ²			0.110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Review_{t-1}*LnFEE_{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 <가설 Ⅲ>의 검증(경영자 교체의 조절효과)

식(Ⅲ)는 “경영자 교체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Ⅲ>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6>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 * CEO_{t,i}$)를 통해 경영자 교체($CEO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Total_{t,i} * CEO_{t,i}$)의 계수는 17.588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경영자 교체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상호작용변수($QC_Total_{t,i} * CEO_{t,i}$)의 계수가 예상과 같이 양(+)의 값을 가져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자의 임기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 현상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노준화와 왕현선 2005)와 <가설 I>검증결과로 해석하여 볼 때,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경영자 교체($CEO_{t,i}$)는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 현상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노준화와 왕현선 2005)와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Total_{t,i}$)은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P-Value 값이 0.433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감사시간과 분·반기검토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가설 I-1>과 <가설 I-2>의 검증결과와 같이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의 계수 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에 분·반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의 계수 값은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아, 이 둘의 희석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 총자산($\text{LnSIZE}_{t,i}$), 전기총자산 순이익률($\text{ROA}_{t,i}$), BIG4회계법인($\text{BIG}_{t,i}$)은 예상과 같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text{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text{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text{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299.2(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0.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2.0%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6에서 최대 3.941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6> 식(Ⅲ)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Total_{i,t-1} + a_2CEO_{i,t-1} + a_3QC_Total_{i,t-1} * CEO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7.000	0.000	0.999
<i>QC_Total_{i,t-1}</i>	+	3.443	0.607	0.436
<i>CEO_{i,t-1}</i>	+	0.355**	4.768	0.029
<i>QC_Total_{i,t-1}*CEO_{i,t-1}</i>	+	17.588**	5.974	0.015
<i>LnSIZE_{i,t-1}</i>	-	-0.225***	34.341	0.000
<i>LEV_{i,t-1}</i>	+	0.017***	55.015	0.000
<i>ROA_{i,t-1}</i>	-	-0.018***	14.241	0.000
<i>CFO_{i,t-1}</i>	-	0.009*	2.826	0.093
<i>GRW_{i,t-1}</i>	+	0.004***	12.824	0.000
<i>BIG_{i,t-1}</i>	-	-0.595***	43.005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99.2(df 69)***		
Nagelkerke R ²		0.103		
Accuracy of Classification		82.0%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Total_{i,t-1}*CEO_{i,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1 <가설 Ⅲ-1>의 검증

식(Ⅲ-1)은 “경영자 교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Ⅲ-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7>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Audit_{t,i}*CEO_{t,i})를 통해 경영자 교체(CEO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i})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Audit_{t,i}*CEO_{t,i})의 계수는 11.941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경영자 교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신임경영자의 경우, 기존경영자와 비교할 때 회계처리조정(Big Bath)에 대한 유인이 크다. 따라서 감사위험평가 및 감사절차상 문제점을 더 많이 발견케 하는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높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노준화와 왕현선 2005) 경영자 교체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김중길과 최애화 2011)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가설 Ⅲ>의 검증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P-Value 값이 0.089로 유의성 다소 낮게 나타나 <가설 Ⅲ-2>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추정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경영자 교체(CEO_{t,i})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며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i})은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사기간에는 경영자 교체보다는 감사품질 관리검토시간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기 총자산(LnSIZE_{t,i}),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

액성장율($GRW_{i,t}$)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i,t}$)은 선행연구와 달리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였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302.6(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0.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1.9%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5에서 최대 3.861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7> 식(Ⅲ-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CEO_{i,t-1} + a_3QC_Audit_{i,t-1} * CEO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1.866	0.000	0.999
<i>QC_Audit_{i,t-1}</i>	+	8.417**	4.166	0.041
<i>CEO_{i,t-1}</i>	+	0.248	2.425	0.119
<i>QC_Audit_{i,t-1}*CEO_{i,t-1}</i>	+	11.941*	2.906	0.088
<i>LnSIZE_{i,t-1}</i>	-	-0.223***	34.556	0.000
<i>LEV_{i,t-1}</i>	+	0.017***	54.884	0.000
<i>ROA_{i,t-1}</i>	-	-0.018***	14.528	0.000
<i>CFO_{i,t-1}</i>	-	0.009*	2.879	0.090
<i>GRW_{i,t-1}</i>	+	0.004***	12.619	0.000
<i>BIG_{i,t-1}</i>	-	-0.595***	44.977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302.6(df 69)***	
Nagelkerke R ²			0.104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Audit_{t-1}*CEO_{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4.2 <가설 Ⅲ-2>의 검증

식(Ⅲ-2)는 “경영자 교체는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Ⅲ-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관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28>에 요약되어 있다.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i} * CEO_{t,i}$)를 통해 경영자 교체($CEO_{t,i}$)가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심변수($QC_Review_{t,i} * CEO_{t,i}$)의 계수는 12.953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경영자 교체는 감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설을 기각하였다.

상호작용변수($QC_Review_{t,i} * CEO_{t,i}$)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결과로 <가설 Ⅲ-1>의 결과로 해석하여 볼 때 신임경영자는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분·반기검토 기간에도 자신의 요구에 협조적인 감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경영자 교체($CEO_{t,i}$)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 현상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노준화와 왕현선 2005)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Review_{t,i}$)은 <가설 I-2>와 같이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기 총자산($\ln SIZE_{t,i}$), 전기 총자산순이익률($ROA_{t,i}$), BIG4회계법인($BIG_{t,i}$)은 예상과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부채비율($LEV_{t,i}$),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i}$)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동일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i}$)은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계수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매출액의 증감과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순환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적 건전성 대용지표로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카이제곱은 293.9(df69)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설명력을 보여주는 Nagelkerke R^2 은 1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회귀모형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R^2 값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회귀 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82.0%를 보였다. 본 연구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모형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들의 VIF값을 차용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들의 VIF값은 최소 1.105에서 최대 2.86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8> 식(Ⅲ-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Review_{i,t-1} + a_2CEO_{i,t-1} + a_3QC_Review_{i,t-1} * CEO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47.679	0.000	0.999
<i>QC_Review_{i,t-1}</i>	+, -	-4.873	2.368	0.124
<i>CEO_{i,t-1}</i>	+	0.289**	4.371	0.037
<i>QC_Review_{i,t-1}*CEO_{i,t-1}</i>	+, -	12.953**	6.226	0.013
<i>LnSIZE_{i,t-1}</i>	-	-0.243***	39.964	0.000
<i>LEV_{i,t-1}</i>	+	0.017***	54.669	0.000
<i>ROA_{i,t-1}</i>	-	-0.017***	13.363	0.000
<i>CFO_{i,t-1}</i>	-	0.009	2.527	0.113
<i>GRW_{i,t-1}</i>	+	0.004***	13.629	0.000
<i>BIG_{i,t-1}</i>	-	-0.523***	32.817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93.9(df 69)***		
Nagelkerke R ²		0.101		
Accuracy of Classification		82.0%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_Review_{t-1}*CEO_{t-1}*: 상호작용변수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5 실증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연구모형 I), 감사보수의 조절효과(연구모형 II) 그리고 경영자 교체의 조절효과(연구모형 III)를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감사인 교체직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교체여부에 재량발생액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권혜진과 김명인(2010)의 선행연구와 감사인 교체직전연도에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는 신근식 등(201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은 총기간 (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감사기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I> 및 <가설I-1>을 지지하였으며 감사기간에서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보다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분·반기검토기간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I-2>을 지지하였다. 분·반기검토와 비교하여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검토보다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보다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보수를 상호작용 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기간에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II-1>을 지지하였다. 즉,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감사인 교체직전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위험이 높을 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증가하면 시간당보수가 하락하기 때문에(배길수 등 2015), 감사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분·반기검토기간에는 감사보수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II-2>를 지지하였으나 <가설 II>를 기각하였다. <가설 I-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에 대하여 감사보다 감사인의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익을 보고하는데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갖게 되며 감사인 교체현상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노준화와 왕현선 2005; 김중길과 최애화 2011)된 경영자 교체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감사기간 그리고 분·반기검토기간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III> 및 <가설 III-1>을 지지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III-2>는 기각하였다. 경영자는 보너스 산출이나 성과계약 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평가받게 되므로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익조정을 행할 유인을 갖는다(고윤성

과 기은선 2014). 신입경영자는 전임경영자가 처리하지 않은 손실을 인식하는 Big Bath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전임경영자에게 전가시켜 이후 자신의 성과를 높이하고자 한다(이아영 등2007). 실제로 경영자교체와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경영자의 임기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현상 발생하였으며(노준화와 왕현선 2005) 경영자 교체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김중길과 최애화 2011)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회귀분석결과,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감사 및 분·반기를 포함한 전체 사업연도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는 성향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9> 가설검증결과 요약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가설	관심계수	관심변수	예상부호	가설내용	분석결과 (유의수준)	연구결론	
I (기본모형)	a_1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총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	(5%)	지지
I-1 (감사)	a_1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	(1%)	지지
I-2 (분·반기)	a_1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	분·반기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	(유의하지 않음)	지지

감사보수의 조절효과

가설	관심 계수	관심변수	예상 부호	가설내용	분석결과 (유의수준)	연구 결론
II (기본모형)	a ₃	총품질관리검토 시간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	-	감사보수는 총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유의하지 않음)	기각
II-1 (감사)	a ₃	감사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	-	감사보수는 감사품질 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10%)	지지
II-2 (분·반기)	a ₃	분·반기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과 감사보수의 상호작용변수	+,-	감사보수는 분·반기품질 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의하지 않음)	지지

경영자 교체의 조절효과

가설	관심 계수	관심변수	예상 부호	가설내용	분석결과 (유의수준)	연구 결론
III (기본모형)	a ₃	총품질관리검토 시간비율과 경영자 교체의 상호작용변수	+	경영자 교체는 총품질 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 (5%)	지지
III-1 (감사)	a ₃	감사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과 경영자 교체의 상호작용변수	+	경영자 교체는 감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 (10%)	지지
III-2 (분·반기)	a ₃	분·반기품질 관리검토시간 비율과 경영자 교체의 상호작용변수	+,-	경영자 교체는 분·반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기각

5.6 추가분석

5.6.1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효과

감사보수 및 비정상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김명인 등(2013) 및 김확열과 박미영(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상 감사보수가 증가하면 피감사기업의 보수주의 정도가 감소하며 재무제표의 보수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감사보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가설II-1>의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비정상감사보수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모형 식(IV)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감사보수결정모형은 비정상감사보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인 김명인 등(2013) 및 김확열과 박미영(2010)의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IV-1)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인 비정상감사보수($\text{LnAbFEE}_{i,t}$)는 실제감사보수($\text{LnFEE}_{i,t}$)에서 식(IV-1)의 감사보수결정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예측치(정상감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begin{aligned} AC_{i,t} = & a_0 + a_1QC_Audit_{i,t-1} + a_2LnAbFEE_{i,t-1} + a_3QC_Audit_{i,t-1} * LnAbFEE_{i,t-1} \\ &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text{ -----식(IV)} \end{aligned}$$

$$\begin{aligned} LnFEE_{i,t} = & a_0 + a_1LnSIZE_{i,t-1} + a_2INVREC_{i,t-1} + a_3LOSS_{i,t-1} + a_4LEV_{i,t-1} \\ & + a_5ROA_{i,t-1} + a_6LIQUID_{i,t-1} + a_7FIRST_{i,t} + a_8CSD_{i,t} \\ & + a_9BIG_{i,t} + a_{10}IND_{i,t} + a_{11}YEAR_{i,t} + e_{i,t} \text{ -----식(IV-1)} \end{aligned}$$

여기서,

LnAbFEE_{t-1} : t-1기의 비정상감사보수(실제감사보수-정상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ln(\text{비정상감사보수})$]

$\text{QC_Audit}_{t-1} * \text{LnAbFEE}_{t-1}$: 상호작용변수

INVREC_{t-1} : t-1기 (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LOSS_{t-1} : t-1기 당기순손실인 경우 1, 아니면 0

LIQUID_{t-1} : t-1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FIRST_t : t기 초도감사인 경우 1, 아니면 0

CSD_t : t기 연결자회사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I-1)을 참조.

종속변수는 당기 감사인의 교체 여부(AC_t)이며 관심변수는 감사품질 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_{t-1})과 비정상감사보수(LnAbFEE_{t-1})의 상호작용변수($\text{QC_Audit}_{t-1} * \text{LnAbFEE}_{t-1}$)이다. 따라서 관심변수의 계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효과를 나타낸다. 비정상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은 약화되어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요관심변수($\text{QC_Audit}_{t-1} * \text{LnAbFEE}_{t-1}$)의 계수(a_3)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식(IV)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표 30>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의 계수는 -13.498로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즉, 비정상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감사인 교체직전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선행연구(김명인 등 2013; 김학열과 박미영 201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들은 <가설II-1>의 회귀분석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1})은 10%수준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표 30> 식(IV)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_Audit_{i,t-1} + a_2LnAbFEE_{i,t-1} + a_3QC_Audit_{i,t-1}*LnAbFEE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수		-41.789	0.000	0.999
<i>QC_Audit_{i,t-1}</i>	+	13.861**	15.968	0.000
<i>LnAbFEE_{i,t-1}</i>	+	1.001***	26.382	0.000
<i>QC_Audit_{i,t-1}*LnAbFEE_{i,t-1}</i>	-	-13.498*	2.767	0.096
<i>LnSIZE_{i,t-1}</i>	-	-0.232***	39.228	0.000
<i>LEV_{i,t-1}</i>	+	0.017***	57.249	0.000
<i>ROA_{i,t-1}</i>	-	-0.017***	12.044	0.001
<i>CFO_{i,t-1}</i>	-	0.009*	2.809	0.094
<i>GRW_{i,t-1}</i>	+	0.004***	11.265	0.001
<i>BIG_{i,t-1}</i>	-	-0.626***	48.674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347.2(df 69)***		
Nagelkerke R ²		0.119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식IV> 참조. 다만,

*QC_Audit_{t-1}*LnAbFEE_{t-1}*: 상호작용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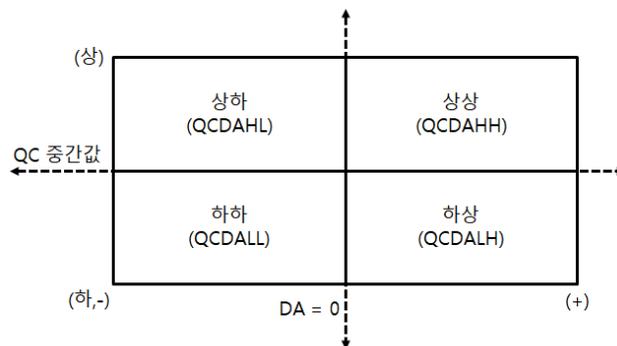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5.6.2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발생액의 결합효과

본 분석에서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의 감사인의 행태(보수적인 감사수행)에 대한 선행연구(DeFond and Subramanyam 1998; 권혜진과 김명인 2010; 신근식 등 2014)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김용수와 전규안 2016; 이영한과 장금주 2016)들 사이의 논리적 정합성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전체표본(N=4,580)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세분화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이 감사인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설 I, I-1, I-2>의 검증결과에 따라 감사인 교체(AC)와 유의성이 가장 높은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QC_Audit)과 재량 발생액(Dechow et al. 1995)을 이용하였다.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내부심리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에 양(+의) 관련성(정석우와 정광화 2015)이 있으며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의 감사시간과 등록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이 유의적으로 재량 발생액을 감소시킨다(김용수와 전규안 2016)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감사인 교체 직전 재량 발생액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3> 추가분석 관심변수의 정의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분석결과로 추론하여 볼 때,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재량 발생액이 낮을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모형 식(V)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begin{aligned}
 AC_{i,t} &= a_0 + a_1 QCDAAH_{i,t-1} + a_2 QCDALH_{i,t-1} + a_3 QCDALL_{i,t-1} + a_4 \ln SIZE_{i,t-1} \\
 &\quad + a_5 LEV_{i,t-1} + a_6 ROA_{i,t-1} + a_7 CFO_{i,t-1} + a_8 GRW_{i,t-1} + a_9 BIG_{i,t-1} + a_{10} IND_{i,t-1} \\
 &\quad + a_{11} YEAR_{i,t-1} + e_{i,t} \text{ -----식(V)} \\
 \\
 DA_{i,t} &= TAC_{i,t}/A_{i,t-1} - (I/A_{i,t-1} + (\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PPE_{i,t}/A_{i,t-1}) \\
 &= (NI_{i,t} - CFO_{i,t})/A_{i,t-1} - (I/A_{i,t-1} + (\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PPE_{i,t}/A_{i,t-1})
 \end{aligned}$$

여기서,

- QCDAAH_{t-1}: t-1기 QC_Audit_{t-1} 중간값 이상이고 DA_{t-1}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 QCDALH_{t-1}: t-1기 QC_Audit_{t-1} 중간값 미만이고 DA_{t-1}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 QCDALL_{t-1}: t-1기 QC_Audit_{t-1} 중간값 미만이고 DA_{t-1} 0과 같거나 작으면 1, 아니면 0
 - DA_{t-1}: t-1기 수정Jones모형(Dechow et al. 1995)에 의해 계산된 재량 발생액
 - NI_t: t기 당기순이익
 - CFO_t: t기 영업현금흐름
 - A_{t-1}: t-1기 총자산
 - ΔREV_t: t기 매출액증가율
 - ΔAR_t: t기 매출채권 증가율
 - PPE_t: t기 설비자산
-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I)을 참조.

종속변수는 당기 감사인의 교체여부(AC_t)이며 관심변수는 감사품질관리 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의 결합집합으로 만들어진 더미변수(QCDAHH_{t-1},

QCDAH_{t-1}, QCDALL_{t-1})이다. 따라서 세 개의 더미변수의 계수 값이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경우,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동시에 재량 발생액이 낮을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요 변수 간의 Pearson 상관관계가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의 두 번째 열에 종속변수인 당기 감사인 교체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있다. 당기 감사인교체와 QCDAHH_{t-1} 및 QCDAHL_{t-1}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QCDAH_{t-1} 및 QCDALL_{t-1}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재량 발생액보다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은 표본집단 QCDAHH_{t-1}와 QCDAHL_{t-1}를 비교했을 때 QCDAHL_{t-1}에서 유의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1> 추가분석 주요 변수의 Pearson 상관관계
(N=4,580 전체표본)

변수	AC _t	QCDAHH _{t-1}	QCDAH _{t-1}	QCDALL _{t-1}	QCDAHL _{t-1}
AC _t	1				
QCDAHH _{t-1}	0.017 (0.257)	1			
QCDAH _{t-1}	-0.030** (0.041)	-0.320*** (0.000)	1		
QCDALL _{t-1}	-0.008 (0.596)	-0.337*** (0.000)	-0.333*** (0.000)	1	
QCDAHL _{t-1}	0.021 (0.157)	-0.333*** (0.000)	-0.330*** (0.000)	-0.347*** (0.000)	1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참조 다만,

QCDAHH_{t,t-1}: t-1기 QC_Audit_{t,t-1} 중간값 이상이고 DA_{t,t-1}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QCDALH_{t,t-1}: t-1기 QC_Audit_{t,t-1} 중간값 미만이고 DA_{t,t-1} 0보다 크면 1, 아니면 0

QCDALL_{t,t-1}: t-1기 QC_Audit_{t,t-1} 중간값 미만이고 DA_{t,t-1} 0과 같거나 작으면 1, 아니면 0

QCDAHL_{t,t-1}: t-1기 QC_Audit_{t,t-1} 중간값 이상이고 DA_{t,t-1} 0과 같거나 작으면 1, 아니면 0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증)

식(V)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²¹⁾가 <표 32>로 요약되어 있다. 먼저 관심변수의 계수는 QCDAHH_{t,t-1}, QCDALH_{t,t-1}, QCDALL_{t,t-1} 각각 -0.052 (P-Value=0.674), -0.313(P-Value=0.013), -0.184(P-Value=0.101)로 모든 기간에서 예상과 같이 음(-)의 값을 가졌으나 QCDALH_{t,t-1}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이 감사인 교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으며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재량 발생액이 낮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더라도 감사투입시간이 재량 발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경우 감사인 교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재무건전성 변수중 전기 부채비율(LEV_{t,t-1}), 전기 매출액성장율(GRW_{t,t-1})이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양(+)²¹⁾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기 총자산(LnSIZE_{t,t-1}), 전기 총자산수익률(ROA_{t,t-1}), BIG4 회계법인 여부(BIG_{t,t-1})는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보여 기대부호와 일치하였다. 한편, 전기 총자산영업현금흐름(CFO_{t,t-1})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1) 본 논문에는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재량발생액((Dechow et al. 1995)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발생액의 상호작용변수(QC_Audit*DA)와 연구모형(Ⅲ)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정석우와 정광화(2015)는 내부심리가능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김용수와 전규안(2016)은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의 감사기간이 유의적으로 재량발생액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감사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부심리시간(품질관리검토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의 결과로 감사품질이 양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변수가 양쪽 방향으로 다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 식(V)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C_{it} = a_0 + a_1QCDAAH_{i,t-1} + a_2QCDALH_{i,t-1} + a_3QCDALL_{i,t-1} + a_4LnSIZE_{i,t-1} + a_5LEV_{i,t-1} + a_6ROA_{i,t-1} + a_7CFO_{i,t-1} + a_8GRW_{i,t-1} + a_9BIG_{i,t-1} + a_{10}IND_{i,t-1} + a_{11}YEAR_{i,t-1}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수(B)	Wald	유의수준(P)
상 수		-39.146	0.000	0.999
<i>QCDAAH_{i,t-1}</i>	-	-0.052	0.176	0.674
<i>QCDALH_{i,t-1}</i>	-	-0.313**	6.161	0.013
<i>QCDALL_{i,t-1}</i>	-	-0.184	2.695	0.101
<i>LnSIZE_{i,t-1}</i>	-	-0.534***	36.935	0.000
<i>LEV_{i,t-1}</i>	+	0.017***	55.450	0.000
<i>ROA_{i,t-1}</i>	-	-0.016***	10.717	0.000
<i>CFO_{i,t-1}</i>	-	0.006	0.830	0.362
<i>GRW_{i,t-1}</i>	+	0.004***	13.284	0.000
<i>BIG_{i,t-1}</i>	-	-0.565***	41.728	0.000
<i>IND_{i,t-1}</i>		포함		
<i>YEAR_{i,t-1}</i>		포함		
Chi-Square		295.4(df 69)***		
Nagelkerke R ²		0.102		
Accuracy of Classification		81.9%		
N		4,580(유효표본 전체)		

주1) 변수의 정의: <표 16 및 31> 참조.

주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정)

VI. 결 론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연도별 자료 4,580개를 표본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연구모형 I), 감사보수의 조절 효과(연구모형 II) 그리고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연구모형 III)를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 교체와 교체 직전연도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와 재량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합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 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최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들(DeFond and Subramanyam 1998; 권혜진과 김명인 2010; 신근식 등 2014)에서는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대용변수로 재량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투입한 시간(품질관리검토시간 등)을 사용하였으며 감사기간 투입된 시간과 분·반기검토기간 투입된 시간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품질관리검토시간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이 특정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검토시간 투입자료를 이용하거나, 1년 또는 2년 동안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한 것과 달리 분석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 및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에 대하여 최초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최근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외연을 넓혔다.

먼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교체 여부에 재량 발생액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권혜진과 김명인(2010)의 선행연구와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에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는 신근식 등(2014)의 선행연구결과와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양(+)의 관련성은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감사기간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I> 및 <가설 I-1>을 지지하였으며 감사기간에서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보다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분·반기검토기간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I-2>을 지지하였다. 분·반기검토와 비교하여 감사는 감사인이 적극적 확신(높은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실사, 외부조회, 검사, 재수행 등 보다 광범위하고 질적으로 높은 절차를 수행하며 감사결과, 피감사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을 받는 경우,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이 폐지된다. 이러한 사유로 감사에 대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은 크다. 따라서 검증결과는 감사인이 분·반기검토보다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보다 감사기간동안 투입된 품질관리검토시간과 재량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이 더 높게 나타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보수를 상호작용 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기간에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II-1>을 지지하였다. 즉,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감사인 교체직전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위험이 높을 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증가하면 시간당보수가 하락하기 때문에(배길수 등 2015), 감사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분·반기검토기간에는 감사보수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교체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II-2>를 지지하였으나 <가설 II>를 기각하였다. <가설 I-2>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분·반기검토는 감사인이 소극적 확신(보통 수준의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며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사인은 분·반기검토에 대하여 감사보다 감사인의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익을 보고하는데 협조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갖게 되며 감사인 교체현상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노준화와 왕현선 2005; 김중길과 최애화 2011)된 경영자 교체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총기간(감사기간+분·반기검토기간)과 감사기간 그리고 분·반기검토기간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III> 및 <가설 III-1>을 지지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III-2>는 기각하였다. 경영자는 보너스 산출이나 성과계약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평가받게 되므로 자신의 사적이익 추구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익조정을 행할 유인을 갖는다(고운성과 기은선 2014). 신임경영자는 전임경영자가 처리하지 않은 손실을 인식하는 Big Bath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 조정한 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전임경영자에게 전가시켜 이후 자신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이아영 등 2007). 실제로 경영자 교체와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경영자의 임기 초기에 유의적인 감사인 교체 현상 발생하였으며(노준화와 왕현선 2005) 경영자 교체시 감사인을 더 교체하는(김중길과 최애화 2011)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회귀분석결과,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감사

및 분·반기를 포함한 전체 사업연도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을 교체하는 성향은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을 통해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전체표본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 각각 중간값과 '0'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로 구분한 4개의 집단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감사기간에서 비정상감사보수는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재량 발생액보다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재량 발생액이 낮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사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더라도 감사투입시간이 재량 발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경우 감사인 교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6.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감사인 교체와 교체직전연도의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수행에 대한 선행연구와 감사위험과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사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정부감독당국에서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案)”의 주요내용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²²⁾(등록 기본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

22) <가설 1>검증결과, 높은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은 우호적인 감사인을 선호하는 피감사 회사에게 감사인 교체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만이 상장회사 감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 감사인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만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6+3’ 제도²³⁾(자유수임계약 6년 후 3년 감사인지정계약), 선택지정제(회사가 감사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가운데 하나를 지정), 표준감사시간제도²⁴⁾(자산규모, 업종 등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한 필요 감사시간)가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안임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또한,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와 신임경영자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회사의 경우 정부감독당국에서 회계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공시된 직급 및 직무별 투입인원과 투입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재량적 발생액(감사품질)과 품질관리검토시간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과 달리 품질 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 그리고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최근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외연을 넓히는데 이바지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관심변수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산정 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상 직급별 투입시간을 직급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한, 감사인 교체는 감독당국에 의한 강제교체와 기업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교체로 구분되며 자유교체는 감사인의 사임(resignation)에 따른 자발적 교체와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해임(auditor dismissal)하는 비자발적 교체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실재성 및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었다.

23) <가설 Ⅲ> 검증결과, 신임경영자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인으로 교체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위해서는 선택지정제 및 지정감사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24) <가설 Ⅱ> 검증결과, 과도한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킴으로 업종별로 다양한 표준감사시간이 마련될 경우, 동 투입시간 대비 과도한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대영, 안미강. (2017). 신임경영자 교체유형과 회계선택. 『국제회계연구』, 73, 51-72.
- 고윤성, 기은선. (2014). 최고경영자 교체와 조세회피. 『경영학연구』, 43(4), 1169-1196.
- 곽영민, 최종서. (2011). 최고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간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36(2), 129-184.
- 권수영, 노준화, 배길수. (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9(4), 191-218.
- 권혜진, 김명인. (2010). 감사인 유지제도 하에서의 회계법인 교체기업과 비교체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세무와 회계』, 11(2), 297-324.
- 김명인, 최종학, 서민정. (2008).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 보수와 고객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33(4), 176-210.
- 김명인, 정민경, 선우혜정. (2013).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49, 173-200.
- 김용수, 전규안. (2016).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5(8), 1339-1375.
- 김은. (2009). “감사인과 이익조정: 감사인 교체 및 지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춘. (2017). “국내 비상장기업의 감사인 교체에 관한 실증연구: 감사의견의 종류 및 원인별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길, 최애화. (2011). 연속감사제도하에서 감사인 교체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9(1), 172-178.
- 김확열, 박미영. (2010). 감사보수가 재무제표 보수성과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0(1), 81-111.
- 노준화, 왕현선. (2005). 경영자 변경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42, 417-442.
- 류승우, 이종천, 김응길, 한승수. (2015).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4), 213-246.
- 박연희, 정문기. (2014). 현행 제도하에서 파트너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Working Paper, 2014. 수원대학교, 공주대학교.
- 박영진. (2012).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재무보고품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일, 곽수근. (2007).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46), 191-226.
- 박종일, 전규완, 최종학. (2003).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8(4), 141-176.
- 박홍조, 정태범. (2008).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정착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4), 1751-1785.
- 배길수, 이재은, 노준화, 최승욱. (2015).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한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대응. 『회계학연구』, 40(6), 81-117.
- 배청홍. (1997). 감사인 변경이론에 대한 소고. 『경북산업대학』, 225-240.
- 서민정, 최종학, 김명인. (2007). 감사인 유지제도 하에서의 감사인 교체와 기업의 이익조정. 『2007 회계감사 심포지엄』, 1-27.
- 손성규. (2006).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서울: 박영사.

- 손성규, 김연화. (2005). 교체를 앞둔 감사인의 특성. 『회계와 감사연구』, 42, 269-290.
- 손성규, 이영한, 신용인. (2006).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위험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파트너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회계와 감사연구』, 44, 335-362.
- 손성규, 이은철. (2005).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실증 분석-기업특성, 감사품질, 감사인 교체를 중심으로. 『2005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30
- 신근식, 조형진, 최종학. (2014).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의 보수적 회계 감사.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6(1), 179-211.
- 심동석, 안창호. (2015). 최고경영자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국제회계연구』, 64, 127-146.
- 안혜림, 최국현. (2017). 경영자의 실제이익조정 활동이 회계감사 품질 관리검토시간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31(4), 33-59.
- 오광욱, 차승민, 정석우. (2008). 감사보수, 비정상감사보수 및 감사인유형과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시장별 비교. 『2008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1-41
- 이강일, 천종률. (1999). 이익조정의 형태와 경기변동과의 관계: 빅베쓰 (Big Bath)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산경연구』, 175-194.
- 이상호. (2012). “회계법인 내의 파트너 강제교체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 (2009). 감리와 감사품질: 감사보수 감사투입시간을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 9(3), 123-156.
- 이아영, 전성빈, 박상수. (2007).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익조정. 『회계학연구』, 32(2), 117-151.
- 이아영, 전성빈, 박상수, 최종학. (2009). 최고경영자의 교체이유와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의 차이. 『회계학연구』, 34(2), 45-78.

- 이영한, 장금주. (2016).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요인과 감사인 규모가 감사인 업무품질관리검토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연구』, 21(6), 55-85.
- 이재은. (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금감원 품질관리감리대상, 외국회계감독기구 등록여부 및 조직 운영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36(1), 125-181.
- 이창우, 송혁준, 전규안, 권오상. (2015). 『회계감사 Study Guide』. 서울: 경문사.
- 이효익. (1990). 감사인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1(1), 1-36.
- 정대길, 송인만, 박연희. (2009).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현행규정에 의한 금지, 조건부, 허용된 비감서비스를 기준으로. 『회계학연구』, 34(1), 143-170.
- 정문중. (1997). 대리인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22(4), 91-121.
- 정석우, 정광화. (2015). 회계법인의 내부 심리업무와 감사품질. 『회계연구』, 20(6), 31-53.
- 정우성. (2010). 비감사서비스제공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지배구조. 『국제회계연구』, 33, 355-382.
- 최기호, 윤태화, 박종성. (2004). 산업내 감사인간 경쟁정도가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5(1), 128-131.
- 최종학, 박종일, 전규안. (2005).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1), 121-154.

2. 국외문헌

- Antle, R. and B. Nalebuff. (1991). Conservatism and Auditor-Client Negoti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31-59.
- Asare, S., J. Cohen and G. Trompeter. (2005).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Client Risk, Acceptance, and Staff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4(6), 489-520.
- Ayers, S. and S. E. Kaplan. (2003). Review Partners' Reactions to Contact Partner Risk Judgments of Prospective Clien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1), 29-45.
- Bedard, J. and K. Johnstone. (2004). Earnings Manipulation Risk, Corporate Governance Risk, and Auditors' Planning and Pric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9 (2), 277-304.
- Chi, W., E. B. Douthett Jr. and L. L. Lisic. (2012). Client Importance and Audit Partne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1, 320-336.
- Choi, J. H., J. B. Kim and Y. Zang.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Normal Audit Fees.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and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Chow, C. W. and S. J. Rice.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The Accounting Review*, 57(2), 326-335.
- Chung, H. and S. Kallapur. (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 931-955.
- Davidson III, P. Jirapron and P. Dadalt. (2005). Causes and Consequences of Audit Shopping: An Analysis of Auditor

- Opinions,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 Changes. *Working Paper*.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83–199.
- DeAngelo, L. E. (1982). Mandated Successful Efforts and Auditor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71–203.
- Dechow, P. M.,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April), 193–225.
- Dee, C., A. Lulseged and T. Nowlin, (2002).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3).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ve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415–431.
- DeFond, M. and L.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36–67.
- Dhaliwal, D., J. Schatzberg and M. Trombley (1993).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Preceding Auditor Chang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2(Fall), 22–37.
- Doyle, J., W. Ge and S. McVay.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193–223.
- Dye, R. (1991).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347–374.

- Ferguson, M.J., Seow, G.S., Young, D. (2004).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UK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1 (4), 813–841.
- Francis, J. and E. Willson. (1988). Auditor Changes: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October), 663–682.
- Ge, W. and S. McVay. (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after Sarbanes–O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 137–158.
- Gul, F., C. J. Chen and J. Tsui. (2003). Discretionary Accounting Accruals, Managers’ Incentive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3), 441–464.
- Hope, O.-K., J. C. Langli. (2010). Auditor Independence in a Private Firm and Low Litigation Risk Setting. *The Accounting Review*, 85(2), 573–605.
- Kothari, S. P. and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1), 163–197.
- Krishnan, J. (1994). Auditor Switching and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69(1), 200–215.
- Matsumura, E. and R. Tucker. (1995). Second Partner Review: An Analytical Model.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10 (1), 173–200.
- McKeown, J. C., J. F. Mutchler and W. Hopwood. (1991). Towards an Explanation of Auditor Failure to Modify the Audit Opinion of Bankrupt Compani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0, 1–13.
- Murphy, K. J. and J. Zimmerman. (1993). Financial Performance and

- Surrounding CEO Turnover.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1-3), 273-315.
- Newman, D. P. and K. E. Novoselov. (2009). Delegation to Encourage Communication of Proble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7(4), 911 - 942.
- Peter Wells. (2002). Earnings Management Surrounding CEO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Finance*, 42, 169-193.
- Pourciau, S. (1993). Earnings Management and Nonroutine Executive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1-3), 317-336.
- Reynolds, J.K., Francis, J. R. (2001). Does Size Matter? The Influence of Large Clients on Office-Level Auditor Repor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3), 375 - 400.
- Schelleman, C. and W. Knechel. (2010). Short-Term Accruals and the Pricing and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9 (1), 221-250.
- Schwartz, K. B.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248-261.
- Smith, D. (1986). Audit "Subject to" Opinions, Disclaimers and Auditor Chang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6 , 95-108.
- Tucker, R. and E. Matsumura. (1997). Second-Partner Review: An Experimental Economics Investigat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6(1), 79-98.
- Watts, R. and J. Zimmerman. (1983). Agency Problems, Auditing, and the Theory of the Firm: Some Evidenc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613-633.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or Changes

Song, Jae Won

Major in Accounting

Ph. D.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4,580 annual data from domestic listed companies from 2014 to 2016 and demonstr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and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fee and CEO turnover.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before the auditor change is high and the higher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the more likely it is to change auditors. This result is concentrated during the period of audit when the risk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ed company and auditors are considered relatively high. But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during the quarter or half review period with relatively lower risks and responsibilities than the audit perio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by adding the moderating variable of audit fee that is expected to affect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shows that the audit fee i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in the period of audit under which the risk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ed company and auditors are perceived to be relatively high.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arger the audit fee is, the weaker is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by adding the moderating variable of CEO turnover that has been studied in advance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uditor change shows that it has been found that the CEO turnover over all period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It is interpreted that in the event of the CEO turnover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is strengthened because the new CEO wants to prefer a cooperative auditor.

Further study analyzes the moderating effect of abnormal audit fee and how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discretionary accrual affect the auditor change using four groups, each divided by their median value and zero. It shows that the abnormal audit fee i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the auditor change in the period of audit such as audit fee. And it confirms that the impact of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on the auditor change is found to be greater than the discretionary accrual. It is interpreted that the auditor change is the highest when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is high and the discretionary accrual is low.

The implications and contributions presented by this study include: This study supports that the listed company auditor registration system, '6+3'system(3 year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after 6 years), selectiv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standard audit

time system which are the current system improvement related to auditors change of government supervisory authorities are in the right dir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regulators should pay attention to supervising companies with excessive audit fee contracts and auditors change by the new CEO.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 on relation between the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discretionary accrual, this study contributes to widen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However, this study does not take account of the quality of the work carried out by position and the auditor change is not divided into compulsory replacement and free replacement(resignation, auditor dismissal)

【KEYWORD】 :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uditor Change,
Audit Fee, CEO Turnover, Abnormal Audit Fee,
Discretionary Accrual,